

# 국가회계 재정통계

2019년 3분기

Vol.20

## News Lette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 | 국가회계 동향

- 2019 국가회계 제도개선 연차개선과제 검토
- 제26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개최
-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B) 자문보고서 의견서 제출
-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 3분기 정례회의 안건분석

### |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19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 『2019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 2019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제3~9차)
- 국가회계의 정책적 활용 Pilot 과정 실시
- 2019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재무결산실무 과정)

### | 재정통계 동향

-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 2018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 결과 분석
-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현황과 결산

### | 공익법인회계 동향

- 공익법인회계기준 전문가 간담회
-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 | 오피니언

- 공공부문의회계의 기준 간 국제적 조화

### | 세미나

- 한-스위스 발생주의 세미나 개최  
『2019 발생주의 회계제도 성과공유 컨퍼런스: 한국과 스위스 모범사례』

### | 공지사항

- 2019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 뉴스레터 이용 안내
- 홈페이지 이용 안내



# 국가회계 재정통계

2019년 3분기

Vol. 20

News Lette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01. 국가회계 동향 .....	2
① 2019 국가회계 제도개선 연차개선과제 검토 .....	2
② 제26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개최 .....	4
③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B) 자문보고서 의견서 제출 .....	6
④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 3분기 정례회의 안건분석 .....	15
02.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30
① 2019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	30
② 『2019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	31
③ 2019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제3~9차) .....	32
④ 국가회계의 정책적 활용 Pilot 과정 실시 .....	33
⑤ 2019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재무결산실무 과정) .....	34
03. 재정통계 동향 .....	36
①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	36
② 2018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 결과 분석 .....	40
③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현황과 결산 .....	49
04. 공익법인회계 동향 .....	52
① 공익법인회계기준 전문가 간담회 .....	52
②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	56
05. 오피니언 .....	59
① 공공부문의회계의 기준 간 국제적 조화 .....	59
06. 세미나 .....	64
① 한-스위스 발생주의 세미나 개최 「2019 발생주의 회계제도 성과공유 컨퍼런스: 한국과 스위스 모범사례」 .....	64
07. 공지사항 .....	76
① 2019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	76
② 뉴스레터 이용 안내 .....	76
③ 홈페이지 이용 안내 .....	76

# 01 국가회계 동향

## 1 2019 국가회계 제도개선 연차개선과제 검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과거 질의회신, 국회 지적사항 등을 통해 발굴한 13개의 연차개선과제를 검토하여 7월 26일(금)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에 보고하였으며, 10월 중순 이후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 상정할 2019 국가회계 제도개선 연차개선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논의할 주요 과제는 퇴직수당충당부채 공시규정 검토, 비교환거래의 충당부채 적용 범위 제외 검토 등이며, 검토한 13개 연차개선과제의 개선 방향 및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가회계 제도개선 연차개선과제〉

구분	개선방향
1 회계정책 변경 누락된 주식 공시사항 정비	[개선 방향] <u>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u> 해당 회계연도뿐만 아니라 <u>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u> 주식 공시하도록 개정 [관련 규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51조),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 수정에 관한 지침(문단10)
2 전기 기초순자산의 표시 기준 마련	[개선 방향] <u>순자산변동표상</u> 전기 기초순자산 항목 작성 시, <u>보고금액과 회계정책 변경 누적효과 등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여</u> 표시하도록 결산작성지침 또는 재무결산 Q&A에 명시 [관련 규정] -
3 사용제한 국고금의 회계처리 규정 신설	[개선 방향] <u>국고금 중 사용제한예금에 대한 회계처리</u> 를 계정과목 해설서뿐만 아니라 <u>예규 본문에 명확히 규정</u> [관련 규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실무해설6)
4 전기 파오납금 반환 시 국고금회계 처리 검토	[개선 방향] 「 <u>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u> 」 제29조에 따르는 경우 ' <u>국고이전지출</u> '로 처리하도록 개정하여 타법과 국가회계기준과의 불일치 해소 [관련 규정] 국고금 회계처리지침(문단12)
5 퇴직수당충당부채 공시규정 검토	[개선 방향] <u>연금충당부채에 준하여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회계처리 및</u> 주식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개정 [관련 규정] 연금 회계처리지침(문단34)

구분	개선방향
6 비교환거래의 충당부채 적용 범위 제외 검토	[개선 방향] <b>비교환거래(사회보장급여 포함)를 충당부채 인식 범위에서 제외</b> 하여 지침 간 상충 해소 [관련 규정]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문단2)
7 '임차개량자산' 계정과목 신설	[개선 방향] '신급임차료' 및 '임차개량자산' 계정과목을 신설하고, <b>임차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명확한 지침</b> 을 실무해설에서 제공 [관련 규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실무해설12)
8 국가회계편람 내 장·단기 구분 문구 검토	[개선 방향] 국가회계편람 내 <b>장·단기 구분 기준을 일치</b> 시키고(1년 이상 → 1년 초과), 관련 실무해설 및 적용사례 등 정비 [관련 규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문단10),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실무해설21, 적용사례2, 10, 13, 2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문단3, 적용사례10),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적용사례6, 7)
9 관련 법령 개정 에 따른 예규 개정	[개선 방향] <b>타 법률의 개정된 정의 및 분류</b> 를 국가회계예규에 반영 [관련 규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문단5),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문단3),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문단3), 연금 회계처리지침(다수 문단)
10 법령개정에 따른 정부보관금 관련 지침 개정	[개선 방향] 기획재정부 국고과의 '보관금 관리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를 반영 하여 '세입·세출의 회계처리지침'상 정부보관금의 정의 및 분류체계 개정(2020년 이후) [관련 규정]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11 압수품과 몰수품 주석정보 정리	[개선 방향]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비화폐성 자산에 해당하여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정보 이용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상 주 석사항 중 '압수품과 몰수품 내역'을 삭제(10. 법령개정에 따른 정 부보관금 관련 지침 개정과 함께 논의하여 2020년 이후 개정) [관련 규정]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문단10
12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한 검토	[주요 논의사항] 국가회계기준상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한 정의, 적용 가능 여 부,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한 예규 신설 등 논의 필요 [관련 규정] -
13 과오납 반납금 회계처리 검토	[개선 방향] 현재 과오납금 반환의 경우 수익 인식 시점이 아닌 현금화된 시점 이 당해 연도인지 전기 이전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결정되도록 디 브레인 시스템이 잘못 구현되어 있으므로, 수익 인식 시점을 고려하 여 회계처리가 결정되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디브레인 시스템 개선 사항) [관련 규정] -

## 2 제26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9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제26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국가회계자문위원회는 국가회계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센터 내의 자문기구이며, 정부위원 1명, 민간위원 8명 및 해외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가회계 자문위원회 위원 현황

- 정부위원(1): 박성동(기획재정부 국고국장)
- 민간위원(8):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동욱(제주대학교 교수),  
이아영(강원대학교 교수), 최연식(경희대학교 교수), 주인기(국제회계사연맹 회장)  
심태섭(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윤영진(계명대학교 교수), 배원기(홍익대학교 교수)
- 해외위원(3): Ian Ball(공공부문화계사협회 국제부문 회장)  
Andreas Bergmann(취리히대학교 교수), Delphine Moretti(OECD 공공예산정책국)

제26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는 「IPSAS 자문보고서 '측정' 의견제출안」 및 「국가회계 프로젝트: 연금 회계처리 개선」 등 2개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정부위원 1명과 민간위원 4명이 참여하였다. 더불어 IPSAS 자문보고서 '측정' 의견제출안 논의를 위해 IPSASB 위원인 정도진 교수(중앙대학교)와 권용우 책임연구원(한국회계기준원)이 외부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 가. (안건1) IPSAS 자문보고서 '측정' 의견제출안 논의

첫 번째 안건으로 IPSASB의 자문보고서 '측정' 관련 센터에서 준비한 제출의견 중 '차입원가 회계처리의 원칙', '거래원가 회계처리 원칙', '자산·부채의 후속측정 흐름도'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센터는 해당 자문을 반영하여 최종의견을 9월 말 국제공공부문화계기준위원회로 제출하였다.

IPSAS 자문보고서 '측정' 의견제출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1. 국가회계 동향 - ③ 국제공공부문화계기준위원회 자문보고서 의견서 제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 (안건2) 국가회계 프로젝트: 연금 회계처리 개선

연금 회계처리 개선 프로젝트는 센터에서 진행하는 국가회계프로젝트 중 하나로 연금 회계처리 지침 통합 및 분리,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검토, 표시 및 공시 방법 개선 등 연금 관련 현행 이슈 검토를 통해 회계처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제이다.

본 자문위원회에서는 프로젝트의 이슈 중 하나로 국민연금 특례 회계처리의 현황과 의의 및 장단점을 보고하고, 특례 회계처리의 존치 여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준조세 성격인 국민연금에 대해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근거로 특례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과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방식인 현행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특례를 유지할 경우 국가회계예규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센터는 해당 논의 결과와 이슈 검토 사항 등을 모아 연내 ‘연금 회계처리 개선 쟁점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국가회계 프로젝트 중 하나인 ‘연금 회계처리 개선’의 자세한 내용은 2019년 4분기 뉴스레터 ‘특집-국가회계프로젝트’에서 다룰 예정이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문위원회(9.3), 서울상공회의소 소회의실1〉

### 3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sup>1)</sup> 자문보고서 의견서 제출

IPSASB는 2019년 4월 30일에 「Consultation Paper, Measurement(이하, ‘자문보고서, 측정’)」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자문보고서, ‘측정’은 IPSASB가 자산·부채의 측정 관련 원칙을 다루는 별도의 IPSAS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이슈들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각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보고서는 다수의 의견 요청사항(Specific Matter for Comment)과 IPSASB 측의 예비견해(Preliminary View)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국가회계기준의 연구·발전을 위해 IPSASB의 자문보고서 및 공개초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센터는 국가회계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자문보고서, ‘측정’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2019년 9월 30일에 제출하였다.

#### 가. IPSASB 자문보고서, ‘측정’의 주요 내용

자문보고서는 측정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표 등 프로젝트에 대해 개괄하고, IPSASB 개념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측정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측정 원칙을 현행 IPSAS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차입원가나 거래원가와 같이 자산과 부채의 측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에 대한 IPSASB의 예비견해를 제시하며, 주요 측정 기준별로 개발된 회계규정(안)을 부록으로 수록하고 있다. 다음은 그중 차입원가 및 거래원가 이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1) 차입원가 회계처리 원칙 제안

현행 IPSAS 5, ‘차입원가’는 차입원가를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본화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IAS 23, ‘차입원가’는 모든 차입원가를 자본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보고서는 민간부문과 다른 공공부문의 차입 특성에 주목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민간부문과 달리 차입 의사결정이 중앙집중식으로 이루어지고, 개별 자산 취득만을 위해 차입하는 경우가 흔치 않으며, 외부 차입 이외에 세금, 보조금 등 다양한 재원을 이용하여 자산을 취득한다. 이에 따

1) 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라 적격자산에 대해 차입원가를 추적하고 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자의적일 수 있어 자본화 회계처리 비용이 관련 효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자문보고서는 적격 자산 차입원가에 대한 예외 없이 모든 차입원가를 비용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차입원가 비용화 제안의 주요 근거〉

- 공공부문의 경우 차입이 중앙집중식으로 이루어지며 개별 자산 취득만을 위해 차입하는 경우가 흔치 않음
- 차입원가의 추적 및 배부가 어렵거나 자의적임에 따라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낮으며, 자본화 회계처리 비용이 관련 효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음
- 비용화 또는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공공부문 실체 간의 비교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

2) 거래원가의 회계처리 원칙 제안

자산이나 부채의 취득·발행·처분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용인 거래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IPSAS 12, ‘재고자산’이나 IPSAS 17, ‘유형자산’과 같은 다수의 IPSAS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거래원가 성격의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원칙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IPSAS에 대한 전반적인 일관성과 이해 가능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자문보고서는 거래원가를 자산·부채의 측정치에 포함할지 여부를 해당 자산·부채에 적용할 측정기준의 유형(목적)과 거래원가의 발생시기에 따라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자문보고서의 거래원가 회계처리 원칙 제안〉

측정 기준	측정 목적	거래원가의 발생시기		비고
		거래체결	거래종료	
역사적 원가	유입가격	포함	제외	거래체결(취득) 시점의 거래원가를 포함할 때 유용함
대체원가	유입가격	포함	제외	
공정가치	유출가격	제외	제외	시장참여자 입장에서의 유출가치이므로 거래원가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유용함
이행가치	유출가격	제외	포함	거래종료(처분) 시점의 거래원가를 포함할 때 유용함

재무제표 이용자는 경제적 자원을 유입가치로 측정할 때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금액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수취한 금액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자산·부채를 유입 기반의 측정 기준인 역사적 원가와 대체원가로 측정할 경우 자산·부채 측정치에 거래를 체결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포함시킬 때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경제적 자원을 유출가치로 측정할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는 자산을 매도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또는 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지급할 금액에 대한 정보를 기대하므로 유출 기반의 측정 기준인 공정가치, 이행가치로 자산·부채를 측정한다면 거래를 종료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측정치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만, 자문보고서는 이 중 공정가치의 경우 시장참여자 입장의 측정치에 따라 거래를 종료할 때 부담할 원가가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자산·부채 측정치에서 거래원가를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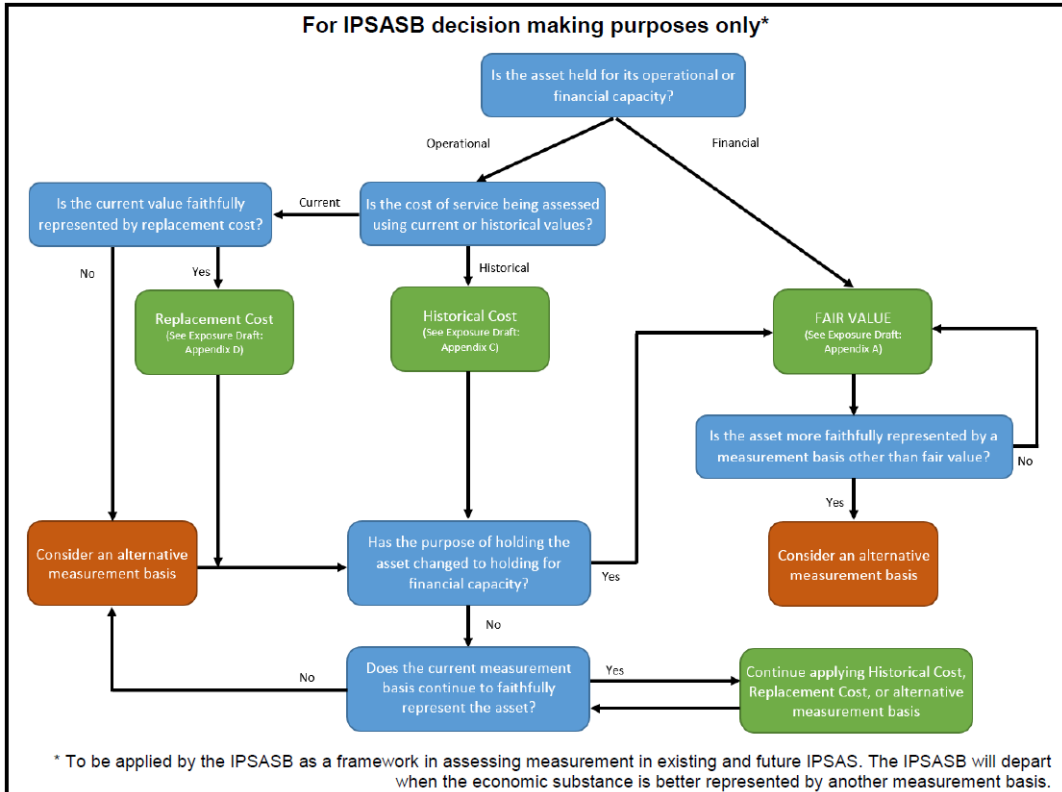
### 3) 자산·부채의 후속측정 흐름도

IPSASB가 측정 프로젝트를 추진한 배경 중 하나는 IPSASB 개념체계의 측정 원칙과 개별 IPSAS 기준서의 측정 규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 IPSASB는 개념체계와 IPSAS의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한 도구로 <자산 후속측정 흐름도>와 <부채 후속측정 흐름도>를 개발하여 자문보고서에 제시하였다. 두 흐름도는 IPSASB 개념체계의 측정 원칙을 따를 경우 자산과 부채의 후속 측정에 적합한 측정 기준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자산의 경우 자산을 재무역량을 위해 보유하는지 혹은 운영역량을 위해 보유하는지 여부가 해당 자산의 후속 측정 기준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먼저 재무역량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은 주로 실체의 미래 활동에 필요한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는 해당 자산을 매도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자산의 공정가치가 적절한 후속 측정 기준일 것이다. 운영역량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당기와 미래 기간에 서비스의 제공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한다. 이때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는 서비스의 제공 원가이므로 이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후속 측정 기준은 역사적 원가 또는 대체원가일 것이다.

〈자산의 후속측정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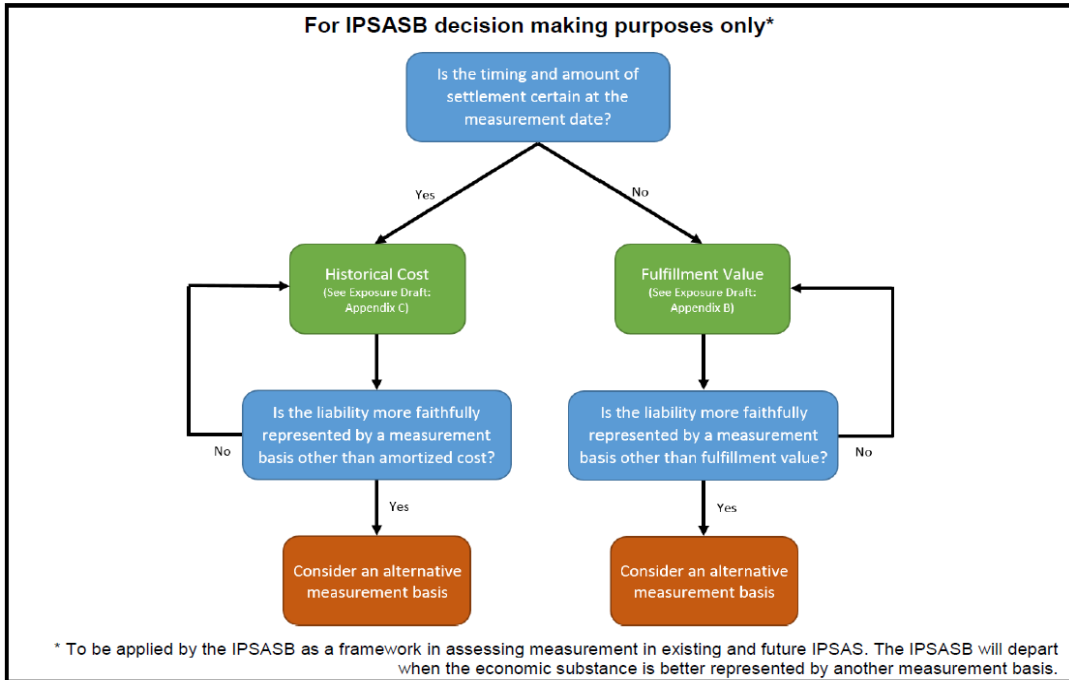
Diagram 4.1-Subsequent Measurement: Assets Flow Chart



부채의 경우 측정일 시점에 부채의 결제금액과 정산시기가 확실한지 여부가 핵심 의사결정 포인트가 된다. 우선 결제금액이 확실하고 정산시기를 알고 있는 부채는 측정일에 결제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를 발생시킨 사건이 일어난 날에 산정된 거래가격인 역사적 원가(상각후원가)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일 것이다. 반대로 결제금액이 불확실하고 시기를 알 수 없는 부채의 경우 측정일에 결제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행가치가 될 것이다.

〈부채의 후속측정 흐름도〉

Diagram 4.2-Subsequent Measurement: Liabilities



IPSASB는 자문보고서의 이 흐름도가 개념체계의 측정 원칙과 현행 IPSAS의 측정 규정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것을 넘어 신규 IPSAS 개발을 돕기 위한 도구이자 개념체계의 제한 범위 검토(Conceptual Framework Limited-Scope Review)를 시작하게 만드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자문보고서에 대한 센터 의견**

자문보고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11개의 예비견해(Preliminary View)와 3개의 의견 요청사항(Specific Matter for Comment)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으나, 센터는 이슈의 중요성과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중 차입원가 및 거래원가와 관련된 2개의 예비견해, 자산·부채의 후속측정 흐름도에 관한 1개의 의견 요청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음은 IPSASB의 의견 요청사항과 그에 대한 센터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PV 7] IPSASB의 예비견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에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한 예외 없이 모든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지 않고 비용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IPSASB의 예비견해에 동의하는가? 만일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option을 지지하는지 설명하고 해당 option을 지지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 The IPSASB’s Preliminary View is that all borrowing costs should be expensed rather than capitalized, with no exception for borrowing costs that are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acquisition, construction, or production of a qualifying asset.
- Do you agree with the IPSASB’s Preliminary View?
- If not, please state which option you support and provide your reasons for supporting that option.

(의견) IPSASB의 예비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센터는 적격자산에 대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비용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문보고서 문단3.13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모든 공공부문 실체가 개별 적격자산에 대해 차입원가를 추적·배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 실체 중 중앙정부의 경우 중앙집중식 차입 의사결정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차입원가 배부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를 제외한 지방정부, 공기업 등 나머지 공공부문 실체의 대부분은 스스로 차입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차입원가의 추적 및 배부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는 모든 차입원가를 비용화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공기업의 경우 IFRS와 같이 차입원가 자본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경우 차입 유발 자산과 차입원가를 연계시킴으로써 회계책임 및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고, 취득원가의 개념에 부합하며, 차입원가가 관련 보고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수익·비용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회계이론적 관점에서 보다 굳건한 토대를 갖고 있다.

차입원가의 자본화 대상이 되는 적격자산은 대개 유입 기반 측정 기준인 역사적 원가로 측정된다. 경제적 자원을 유입가치로 측정할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를 기대하므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차입원가를 포함해야 재무제표 이용자의 회계책임 평가 및 의사결정 목적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IPSASB가 IPSAS의 차입원가 회계처리를 IFRS와 차별화하여 규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IAS 23과 같이 적격자산에 대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경우 자문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PSAS와 IFRS 간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IPSAS와 IFRS를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 공공부문 실체에 재무제표 전환에 따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공부문 실체 중 중앙정부의 경우처럼 적격자산에 대한 차입원가를 추적·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차입원가를 비용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무적 방편(practical expedient)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기타 부대의견〉

예비견해 7에 대한 의견과는 별개로, IPSASB는 IFRS와의 차별화 여부를 논의할 때 차별화의 근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이론적 차이점 혹은 공공부문의 실무적 여건에 기인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준 개발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양자의 이론적 차이점 때문에 IFRS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면 공공부문의 새로운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공공부문의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IFRS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면 IFRS와 동일한 회계처리 원칙을 사용하되, 실무적 방편의 형태로 공공부문 실체에 회계 처리의 선택권을 주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PV 10] IPSASB의 예비견해는 다음과 같다.

거래를 체결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함

- 이행가치로 측정하는 부채의 가치평가에서 제외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가치평가에서 제외
- 역사적 원가와 대체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의 가치평가에 포함

IPSASB의 예비견해에 동의하는가? 만일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산과 부채의 가치평가에서 거래원가의 처리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근거를 기술하시오.

- The IPSASB's Preliminary View is that transaction costs incurred when entering a transaction should be:
  - Excluded in the valuation of liabilities measured at fulfillment value;
  - Excluded from the valua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measured at fair value; and
  - Included in the valuation of assets measured at historical cost and replacement cost.
- Do you agree with the IPSASB's Preliminary View?
- If not, please provide your reasons and state how you would treat transaction costs in the valua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giving your rationale for your proposed treatment.

[PV 11] IPSASB의 예비견해는 다음과 같다.

거래를 종료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함

- 이행가치로 측정하는 부채의 가치평가에 포함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가치평가에서 제외
- 역사적 원가와 대체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의 가치평가에서 제외

IPSASB의 예비견해에 동의하는가? 만일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산과 부채의 가치평가에서 거래원가의 처리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근거를 기술하시오.

- The IPSASB's Preliminary View is that transaction costs incurred when entering a transaction should be:
  - Excluded in the valuation of liabilities measured at fulfillment value;
  - Excluded from the valua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measured at fair value; and
  - Included in the valuation of assets measured at historical cost and replacement cost.
- Do you agree with the IPSASB's Preliminary View?
- If not, please provide your reasons and state how you would treat transaction costs in the valua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giving your rationale for your proposed treatment.

(의견) IPSASB의 제안에 동의한다.

〈기타 부대의견〉

자문보고서가 문단2.27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IPSAS가 이행가치의 적용에 관한 지침을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행가치로 측정하는 부채와 관련하여 거래를 체결하거나 종료할 때 발생 가능한 거래원가의 유형이나 사례를 예상하기 어렵다. 특히, 이행가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 작성자는 부채의 (예상) 결제금액과 (예상) 거래원가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부채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미래 현금유출 예상액에 포함시켜 산정할 가능성이 높다. 즉, 부채의 이행가치 측정치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는 데 필요한 거래원가(실체가 해당 부채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거래원가)가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행가치와 관련된 특징을 고려할 때 IPSASB는 거래원가의 정의와 거래원가 회계처리 원칙에 관한 효과적 논의를 위해 이행가치로 측정하는 부채와 관련하여 거래를 체결 또는 종료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의 대표적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사례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SMC 3] 측정 흐름도(그림 4.1 및 그림 4.2)가 다음과 같은 기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IPSASB가 기존 IPSAS의 측정 규정을 검토하고 새로운 IPSAS를 개발하는 데 유용한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데 동의하는가?

- 개념체계의 측정 목적
- GFS와의 불필요한 차이 감소
- IFRS의 기준서와의 불필요한 차이 감소
- IPSAS 간의 일관성 향상

만일 동의하지 않는다면, IPSASB는 기존 IPSAS의 측정 규정을 검토하고 새로운 IPSAS를 개발할 때 다른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인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 Do you agree that the measurement flow charts (Diagrams 4.1 and 4.2) provide a helpful starting point for the IPSASB to review measurement requirements in existing IPSAS, and develop new IPSAS, acknowledging that other matters need to be considered, including:
  - The Conceptual Framework Measurement Objective;
  - Reducing unnecessary differences with GFS;
  - Reducing unnecessary differences with IFRS Standards; and
  - Improving consistency across IPSAS.
- If not, should the IPSASB consider other factors when reviewing measurement requirements in existing IPSAS and developing new IPSAS? If so, what other factors? Please provide your reasons.

(의견) IPSASB가 제안한 자산부채 측정 흐름도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부채의 후속측정 흐름도와 관련하여 자문보고서는 결제금액이 확실하고 정산시기를 알고 있는 부채의 경우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GFS는 이러한 부채를 역사적 원가가 아닌 시장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결과적으로 IPSASB의 흐름도는 IPSAS의 GFS와의 차이를 유발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4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 3분기 정례회의의 안건분석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이하 'IPSASB')는 2019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동안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2019년 3분기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IPSASB에서 추진 중인 '수익', '비교환비용', '사회기반시설', '리스', '유산' 등의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 안건과 의결사항 등은 IPSASB 홈페이지<sup>2)</su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별 주요 논의사항을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수익(Revenue)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수행의무 개념을 기준으로 삼아 공공부문의 수익거래 회계처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 있다. 현행의 수익 회계처리기준은 수익거래가 교환거래 또는 비교환거래인지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수익 회계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재무제표 작성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구분 기준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IPSASB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수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 개념을 확장하여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수행의무를 부담하는 수익거래는 IFRS 15의 수행의무 접근법을 참고하여 개발한 5단계 공공부문 수행의무 접근법(Public Sector Performance Obligation Approach, 이하 'PSPOA')을 적용하고, 이외의 수익거래는 기존의 개념체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한 일반적인 수익 인식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구분	수익 회계처리 원칙	적용 대상 IPSAS(안)
수익거래	수행의무 있음	공공부문 수행의무 접근법 (PSPOA)
	수행의무 없음	일반적 수익 회계처리 원칙 (개념체계 참고하여 개발 중)
		적용 대상 IPSAS(안)
		ED 70,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 (Revenue with Performance Obligations)'
		ED 71,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 (Revenue without Performance Obligations)'

이번 2019년 9월 정례회의에서는 수행 의무를 부담하는 수익거래에 적용할 공개초안인 ED 70, 'Revenue with Performance Obligations' 공시사항의 범위 및 문구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와 함

2) <http://www.ifac.org/news-events/2019-07/ipsasb-enevents-july-2019>

계 수행의무는 없지만 현재의무를 부담하는 수익거래의 회계처리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의 주요 논의사항들을 요약한 것이다.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p>■ 수익(Revenue): ED 70,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Revenue with Performance Obligations)'</p>	
<p>공시규정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6월 회의에서 IPSASB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T/F와 Staff에게 ED 70의 공시규정을 검토할 것을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ED 70의 공시규정은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공시규정을 토대로 하고 있어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거나 공공부문에 적합하지 않음</li> <li>(b) 대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거래를 강제로 체결해야 하는 실체를 위한 추가 공시사항 개발을 요구함</li> <li>(c) IFRS 15 준용 과정에서 변경된 용어 및 개념을 반영해야 함</li> </ul> </li> <li>• Staff는 공시규정과 관련된 이슈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개정사항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공공부문에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시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특정 공시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IPSAS 1, '재무제표 표시'의 문구를 문단112에 인용하여 공시예외를 허용할 것을 제안</li> </ul> </li> <li>(b) 공공부문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수채권, binding arrangement assets, binding arrangement liability의 증감내역에 관한 문단116 및 문단118의 공시사항 유지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가 구속력 있는 약정에 따른 수익 및 현금흐름의 성격과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li> </ul> </li> <li>→ 이전하기로 약정한 재화 및 용역의 성격, 통상적인 수행의무 이행시기, 주요 지급 조건 등에 관한 문단119의 공시사항 유지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수익의 성격과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요성을 고려한 공시사항의 취합 수준에 대한 검토를 촉진할 수 있음</li> <li>* 문단119에 따라 ED 70 적용 대상인 수익을 개별적으로 공시할 경우 지나치게 자세할 수 있고, 반대로 취합하여 공시할 경우 모호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li> </ul> </li> </ul> </li> <li>(c) 대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강제적 거래 관련 공시사항</li> </ul> </li> </ul>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p>→ 문단120에 대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거래를 강제로 체결해야 하는 실체를 위한 추가 공시사항을 제안</p> <p>* 수행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법령 또는 정책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수행의무 접근법 적용 시 인식될 수익 금액과 인식되지 못할 수익 금액 정보</p>
<p>■ 수익(Revenue): ED 71,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Revenue without Performance Obligations)'</p>	
<p>과거사건 및 자원 유출과 수익 인식 회계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D 71,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Revenue without Performance Obligations)'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에는 구속력 있는 약정에 따른 거래로서 (수행의무는 없으나) 현재의무를 부담하는 거래가 포함됨</li> <li>• 구속력 있는 약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의무를 부담하는 거래에 대한 수익 인식 회계처리는 현재의무가 어느 시점에 발생하는지(즉, 약정 체결 시 혹은 약정 위반 시 부채의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li> <li>• IPSASB 개념체계는 부채의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로 '과거 사건'과 '자원의 유출', '현재의무'를 제시하면서, 현재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의무가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자원 유출을 회피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개념체계 문단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present obligation of the entity for an outflow of resources that results from a past event</li> </ul> </li> <li>• Staff는 이 중 '과거사건'의 발생 시점과 '자원의 유출'의 범위에 대한 IPSASB의 판단을 돕기 위해 각각에 대한 대안들을 개발하였음</li> <li>• Staff는 과거사건의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개의 옵션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옵션 1 - 과거사건은 구속력 있는 약정을 위반하는 시점</li> <li>(b) 옵션 2 - 과거사건은 구속력 있는 약정을 체결하는 시점</li> </ul> </li> <li>• [옵션 1] 실체는 약정의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자원의 유출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약정 체결 시점에는 부채를 일으키는 과거 사건이 없으며, 약정 위반이 부채에 대한 과거 사건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 위반 전까지는 현재의무가 없으므로 자원을 수취하는 시점에는 전액 (즉시) 수익으로 인식함</li> </ul> </li> <li>• [옵션 2] IPSASB 개념체계(문단5.15, 문단5.17)는 암묵적으로 약정 체결을 과거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IASB 개념체계의 경우 자원의 유출은 약정 이행을 위한 것과 약정 위반 시 부담할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음(문단4.42~4.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현재의무가 존재하므로 자원을 수취하는</li> </ul> </li> </ul>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p>시점에는 부채로 인식한 후, 약정활동(enforceable activities)이 완료되거나 가득지출(eligible expenditures)이 일어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함</p> <p>* 5.15 (중략) Obligations are not present obligations unless they are binding and there is little or no realistic alternative to avoid an outflow of resources.</p> <p>5.17 (중략) Where an arrangement has a legal form and is binding, such as a contract, the past event may be straightforward to identify. In other cases, it may be more difficult to identify the past event and identification involves an assessment of when an entity has little or no realistic alternative to avoid an outflow of resources from the entity. (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약정 체결을 과거 사건으로 보아 회계처리할 때 가장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사건에 대한 대안 중 [옵션 2]를 지지함</li> <li>• 부채의 정의 요소 중 '자원의 유출'을 무엇으로 해석하는지 여부도 구속력 있는 약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의무를 부담하는 거래의 수익 인식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li> <li>• IPSASB 개념체계는 '자원의 유출'이 실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단5.15와 5.16에서 현재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의무가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자원 유출을 회피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부채를 결제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이 없다면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만을 설명하고 있음</li> </ul> </li> <li>• Staff는 자원 유출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개의 옵션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옵션 1 - 자원의 유출은 약정 위반으로 인한 자원의 반환만을 의미</li> <li>(b) 옵션 2 - 자원의 유출은 약정 이행을 위한 유출과 약정 위반에 따른 유출을 모두 포함</li> </ul> </li> <li>• [옵션 1] 자원의 유출을 좁게 해석한 것으로, 기존 IPSAS 23, '비교환거래로 인한 수익'의 수익 인식 흐름도*에 부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주 출연이 아닌 거래 결과로) 자산을 인식하면서 관련된 현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즉시 수익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함</li> </ul> </li> <li>• [옵션 2] 자원의 유출을 넓게 해석한 것으로, ED 70에서의 부채에 대한 설명*과 수행의무가 현재의무의 하위 개념으로 본 IPSASB의 과거 의결사항에 부합함</li> </ul>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p>보조금(Grants)과 예산 배정</p>	<p>* ED 70 문단15는 구속력 있는 약정에서 부채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거나 수취한 대가를 반환해야 할 실체의 의무를 나타낸다고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자원의 유출과 관련된 대안 중 자신의 '과거사건'에 대한 권고사항과 일관되는 [옵션 2]를 지지함</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 23, '비교환거래로 인한 수익'은 보조금(Grants)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을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어 다개년 예산 배정을 통한 보조금의 지급 및 수취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음</li> <li>• Staff는 IPSAS 23의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접근법 1 (의제의무 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 수령자는 자원 제공자의 의제의무 발생 여부 및 범위에 따라 보조금을 자산으로 인식함</li> <li>* 자원 제공자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과거 경험(이력)을 토대로 자원 수령자에게 보조금 수취에 관한 정당한 기대가 있을 경우 자원 제공자에게 의제의무가 발생함</li> </ul> </li> <li>(b) 접근법 2 (통제 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 수령자가 통제 가능한 보조금 예산 배정 금액만을 자원 수령자의 자산으로 인식함</li> <li>* 만약, 단년도 예산 배정 방식인 경우 전체 보조금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li> </ul> </li> </ul> </li> <li>• Staff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접근법 2]를 지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접근법 2]는 실제(자원 수령자)가 실제 사용 가능한 자원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므로 보다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li> <li>(b) '과거사건의 결과로 실체가 현재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 자산을 정의하고 있는 IPSASB 개념체계에 부합함</li> <li>(c) 일반적인 (다개년) 예산 배정의 제도적 특징을 고려할 때 법적 소유권 또는 자원에 대한 접근 제한이 어려움</li> </ul> </li> </ul>
<p>자본보조금 (Capital Grants) 회계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의 경우 보조금(grants)에 대한 정의 및 회계처리가 미비하므로 다른 국제 회계기준 또는 일부 국가의 정부회계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IAS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은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이연하여 감가상각비 차감(수익)으로 인식</li> <li>: IAS 20은 1983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현행 IASB 개념체계에 부합하지 않음</li> </ul> </li> <li>(b) 영국 FRS 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모형(performance model)과 발생모형(accrual model) 중 선택 가능</li> <li>: 성과모형의 경우 성과 관련 조건이 이행될 때 수익으로 인식</li> </ul> </li> </ul> </li> </ul>

세부 안건	주요 제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모형의 경우 자산의 기대 내용 연수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익 인식</li> <li>(c) 호주 AASB 10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금(transfer)의 경우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준용하여 실체가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li> <li>: 다만, 자본보조금의 경우 재화 이전이 없어 예외적으로 수행의무 접근법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li> </ul> </li> <li>• 자본보조금의 경우 대개 구속력 있는 약정에 근거하여 제공되므로 상기의 ‘자원의 유출’ 관련 2개 옵션에 대한 IPSASB의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대안이 달라질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옵션 1 - 자원의 유출이 약정 위반으로 인한 자원의 반환만을 의미할 경우 (약정 이행은 자원유출이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약정 체결 시점에는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Transfer recipient가 자원을 통제할 수 있게 된 시점에 자산과 수익으로 인식</li> </ul> </li> <li>(b) 옵션 2 - 자원의 유출이 약정 이행을 위한 유출까지 포함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약정 체결 시점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므로 Transfer recipient가 자원을 통제할 수 있게 된 시점에 자산과 부채를 인식함으로써 수익을 이연하여 인식함</li> <li>: 수익의 이연 인식방법은 보조금 약정에서 어느 정도로 약정활동(enforceable activities)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음</li> </ul> </li> </ul> </li> <li>• Staff는 [옵션 1]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자본보조금 거래에 관한 목적 적합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 [옵션 2]가 ‘자원의 유출’에 대한 자신의 권고사항과 일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옵션 2]를 지지함</li> </ul>

□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Assets)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의 목적은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를 위해 IPSAS 17, ‘유형자산’의 적용 시 재무제표 작성자가 직면할 이슈를 파악하고 연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동 프로젝트는 2014년 3월에 발행된 IPSASB 전략 자문보고서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2015년 6월에 IPSASB 업무계획에 편입되면서 시작되었으나, 자산 통제의 의미, 분리(componentization)의 개념,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간의 구분, 잔존 서비스 잠재력의 측정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2017년 12월부터 프로젝트 연구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2019년 6월에 회의에서 IPSASB가 동 프로젝트 개요를 수정 및 재추진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비로소 프로젝트 개발이 다시 재개되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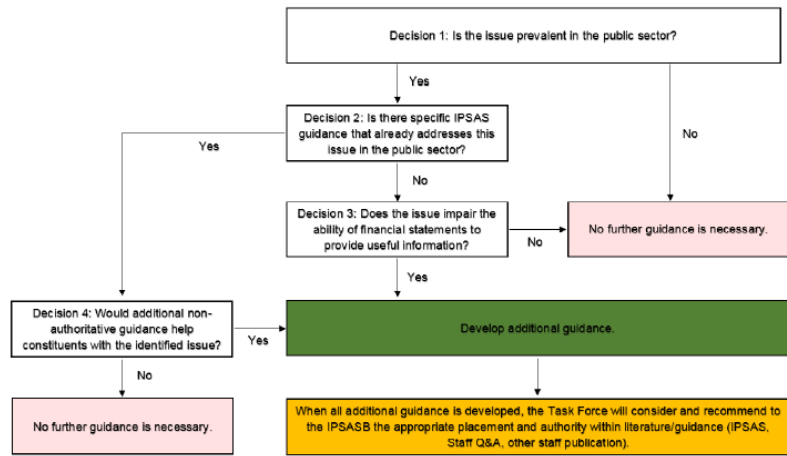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사회기반시설 관련 이슈의 유형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기반시설은 공공부문 실체의 총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많은 지출을 일으키는 중요한 자산임</li> <li>• IPSAS 17, ‘유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을 적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회계처리하는 데 있어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와 성격, 측정, 손상, 구분인식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으로 인지됨</li> <li>• Staff는 해당 문제점들을 (1) 적용 범위 및 정의, (2) 인식, (3) 최초 측정, (4) 후속 측정, (5) 감가상각, (6) 구분 인식, (7) 손상, (8) 제거, (9) 공시 이상 9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분석할 것을 제안함</li> </ul>	
	카테고리	세부 이슈
	(1) 적용 범위 및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정의가 불충분함</li> <li>b. IPSASB에 나열된 사회기반시설의 성격과 예시들이 관련 없거나 사회기반시설의 본질적인 특징들을 담아내지 못함</li> <li>c. 사회기반시설의 토지 회계처리가 불충분함</li> <li>d. 사회기반시설의 예비부품을 자산화 혹은 재고로 처리해야 하는지 불분명함</li> </ul>
	(2)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사회기반시설의 통제 조건은 공공부문 특성상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음</li> <li>b. 민간투자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의 통제 조건은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음</li> </ul>
	(3) 최초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사회기반시설 특성상 측정이 어려울 수 있음</li> <li>b. 사회기반시설의 토지 측정은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li> <li>c. 사회기반시설의 복구비용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음</li> <li>d. 자본화 또는 비용화를 결정하기 위한 최초 원가의 기준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음</li> <li>e.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평가가 복잡할 수 있음</li> </ul>
(4) 후속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사회기반시설의 후속 측정에 대한 적절한 측정 기준이 불충분함</li> <li>b. 사회기반시설을 평가할 때 후속적인 지출을 자본화할 것인지 비용화할 것인지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음</li> <li>c. 자본화 또는 비용화해야 하는 추가 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전문가적 판단을 필요로 함</li> <li>d. 계획된/자연된/이연된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이 불충분함</li> </ul>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e1f5fe;">카테고리</th> <th style="background-color: #e1f5fe;">세부 이슈</th> </tr> </thead> <tbody> <tr> <td>(5) 감가상각</td> <td>                     a. 사회기반시설에 적절한 감가상각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이 불충분함                      b. 긴 내용연수를 가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이 불충분함                      c. 사회기반시설의 토지를 감가상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불충분함                 </td> </tr> <tr> <td>(6) 구분인식</td> <td>a. 구분인식 접근법 지침이 사회기반시설에 부적절할 가능성이 있음</td> </tr> <tr> <td>(7) 손상</td> <td>a. 사회기반시설의 손상에 대한 평가가 복잡함</td> </tr> <tr> <td>(8) 제거</td> <td>a. 사회기반시설의 제거에 대한 지침이 불충분함</td> </tr> <tr> <td>(9) 공시</td> <td>a. 사회기반시설의 공시에 대한 지침이 불충분함</td> </tr> </tbody> </table>	카테고리	세부 이슈	(5) 감가상각	a. 사회기반시설에 적절한 감가상각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이 불충분함 b. 긴 내용연수를 가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이 불충분함 c. 사회기반시설의 토지를 감가상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불충분함	(6) 구분인식	a. 구분인식 접근법 지침이 사회기반시설에 부적절할 가능성이 있음	(7) 손상	a. 사회기반시설의 손상에 대한 평가가 복잡함	(8) 제거	a. 사회기반시설의 제거에 대한 지침이 불충분함	(9) 공시	a. 사회기반시설의 공시에 대한 지침이 불충분함
카테고리	세부 이슈												
(5) 감가상각	a. 사회기반시설에 적절한 감가상각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이 불충분함 b. 긴 내용연수를 가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이 불충분함 c. 사회기반시설의 토지를 감가상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불충분함												
(6) 구분인식	a. 구분인식 접근법 지침이 사회기반시설에 부적절할 가능성이 있음												
(7) 손상	a. 사회기반시설의 손상에 대한 평가가 복잡함												
(8) 제거	a. 사회기반시설의 제거에 대한 지침이 불충분함												
(9) 공시	a. 사회기반시설의 공시에 대한 지침이 불충분함												

- T/F는 현행 IPSAS 규정에서 상기의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 이슈들을 충분히 다루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틀(Framework)을 개발함

**Framework**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 이슈의 분석틀 (Framework)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p>사회기반시설의 토지 회계처리 이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F는 해당 Framework를 이슈 중 사회기반시설의 토지 회계처리와, 통제 조건, 공시 조건에 대해 적용함. 또한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 관련 기타 이슈들에 대해 동 Framework을 이용할 것을 권고함</li> <li>• 현행 IPSAS는 사회기반시설의 토지를 사회기반시설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li> <li>• Framework을 통한 분석 결과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Decision 1] 공공부문에서 일반적인 이슈인가? ☞ 그렇다. 공공부문에서는 토지에 세워진 사회기반시설을 구매하거나 건설하는 경우가 많으며 금액 측면에서도 중요하다.</p> <p>[Decision 2] 공공부문의 해당 이슈를 다룬 구체적인 IPSASB 지침이 있는가? ☞ 그렇다. IPSAS 17, '유형자산'에서는 구분 가능한 토지를 구분하여 인식하도록 한다.</p> <p>[Decision 3] 해당 이슈가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재무제표의 기능을 저해하는가? ☞ 적용되지 않음 (판단 불필요)</p> <p>[Decision 4] 해당 이슈와 관련된 비권위적인 지침이 추가로 필요한가? ☞ 그렇지 않다. 공공부문에 한정된 이슈가 아니며, IPSAS 17에서 이미 사회기반시설의 토지 회계처리에 대해 명백히 다루고 있다.</p> <p>→ T/F의 의견: 현행 지침으로 충분하므로 새로운 지침 개발이 불필요함</p> </div> </li> </ul>
<p>사회기반시설의 통제 조건 이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기반시설의 통제 조건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그 적용이 복잡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다른 실체가 법적으로 소유하거나 두 개 이상이 공공부문 실체에 의해 운영되거나 관리될 수 있음</li> <li>(b) 2개 이상의 공공부문 실체에 의해 통제될 수 있음</li> <li>(c) 토지와 사회기반시설을 하나의 실체가 함께 취득하였으나 다른 당사자들이 운영하거나 관리할 수 있음</li> <li>(d) 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 목적의 토지에 주어지는 접근 권한, 길에 대한 권한, 지역권이 본래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반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li> <li>(e) 중앙정부 소속 사회기반시설은 주로 해당 사회기반시설 사용의 통제를 갖고 경제적 효익이나 서비스를 잠재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다른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실체로 이전됨</li> <li>(f) 사회기반시설은 2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있을 수 있음</li> </ol> </li> <li>• Framework을 통한 분석 결과</li> </ul>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p>[Decision 1] 공공부문에서 일반적인 이슈인가? ☞ 그렇다. 사회기반시설의 통제 결정은 공공부문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p> <p>[Decision 2] 공공부문의 해당 이슈를 다룬 구체적인 IPSASB 지침이 있는가? ☞ 없다. IPSAS 17에서는 (a)~(e) 상황에 따른 명백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p> <p>[Decision 3] 해당 이슈가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재무제표의 기능을 저해하는가? ☞ (d), (f)는 그렇다. (a), (b), (c), (e)는 그렇지 않다.</p> <p>[Decision 4] 해당 이슈와 관련된 비권위적인 지침이 추가로 필요한가? ☞ 적용되지 않음 (판단 불필요)</p> <p>→ T/F의 의견: (d), (f)에 대한 추가 지침이 필요하며 (a), (b), (c), (e)의 경우 불필요함</p>
<p>사회기반시설 공시 관련 이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주된 책임은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하고 개선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상태, 계획되거나 지연된 유지보수, 사회기반시설의 장기적인 특성과 평가에 대한 공시지침이 불충분함</li> <li>• Framework을 통한 분석 결과</li> </ul> <p>[Decision 1] 공공부문에서 일반적인 이슈인가? ☞ 그렇다.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제한된 공시 이슈는 공공부문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p> <p>[Decision 2] 공공부문의 해당 이슈를 다룬 구체적인 IPSASB 지침이 있는가? ☞ 그렇다. IPSAS 17에 물리적인 상태, 계획되거나 지연된 유지보수, 사회기반시설의 장기적인 특성과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지만 일반적인 유형자산 공시지침은 제공하고 있다.</p> <p>[Decision 3] 해당 이슈가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재무제표의 기능을 저해하는가? ☞ 적용되지 않음 (판단 불필요)</p> <p>[Decision 4] 해당 이슈와 관련된 비권위적인 지침이 추가로 필요한가? ☞ 아니다. 해당 이슈는 공공부문에 한정된 이슈가 아니다.</p> <p>→ T/F의 의견: 기존 지침이 충분하므로 추가 지침은 불필요함</p>

□ 리스(Lease)

리스 프로젝트의 목적은 IFRS 16, '리스(Leases)'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 제공자와 리스 이용자를 위한 리스 회계처리를 수정하고, 현행 IPSAS 13, '리스(Leases)'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IPSAS를 개발하는 것이다.

2018년 9월 회의에서 IPSASB는 리스 이용자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ED 64, '리스(Leases)'에서 제시한 대로 사용권(right-of-use) 모형을 적용할 것을 잠정적으로 의결한 바 있다. 리스 제공자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회의를 통해 프로세스, 개념적 이슈, 실무적 이슈, IFRS 16과의 정합성 이슈 등을 검토하였으며, IFRS 16과 차이를 두어야 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IPSASB의 기준(criteria)을 선정하기 위해 리스 T/F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T/F는 2019년 7월에 개최된 대면회의에서 IPSASB의 평가 기준(criteria)을 적용하여 ED 64 리스 제공자의 회계처리를 IFRS 16 리스 제공자의 회계처리와 비교하였으며, 동 이슈에 대해 응답자들이 제기한 개념적 이슈들을 평가하였다.

이번 2019년 9월 회의에서 IPSASB는 IFRS 16과 ED 64의 리스 제공자 회계처리 관한 실무적인 이슈를 의논하였으며, IFRS 16 리스 제공자 회계처리와 달리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2019년 12월 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리스 제공자 회계처리에 대한 T/F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F의 리스 제공자 회계처리에 대한 주요 평가 결과</li> <li>-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공부문에서 리스 제공자의 리스 회계처리 및 리스의 분류를 위해 두 가지 모형(금융리스, 운용리스)을 개발해야 할 개념적인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음</li> <li>(a) IFRS 16 리스 제공자 회계처리는 공공부문의 재무보고 목적을 충족하지 못함</li> <li>(b) IFRS 16 리스 제공자 회계처리는 IPSASB의 개념체계 및 IPSAS 기준서에 배치됨</li> <li>(c) GFS와의 관계는 개념적 관점에서의 차이를 평가하는 것과는 무관한 요인임</li> <li>(d) IFRS 16 리스 제공자 회계처리는 IPSAS 32, '민간투자사업: 양허자'의 규정에 배치됨</li> <li>(e) 응답자가 추가로 제시한 개념적 이슈들은 IFRS 16 리스 제공자의 회계처리</li> </ul>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p>로부터의 이탈(departure) 문제와 무관하거나, IFRS 16으로부터의 이탈을 정당화하는 것들임</p> <p>(f) IPSASB에서 제기된 추가적 이슈들은 IFRS 16으로부터의 이탈 문제와 무관하거나 다른 평가 기준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T/F가 추가로 검토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 제공자의 리스채권과 리스부채의 인식과 측정 문제의 경우 IFRS 16으로부터의 이탈 문제에 대한 IPSASB의 의결 결과에 따라 추후 논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li> </ul> </li> <li>• T/F 권고사항: IFRS 16 리스 제공자의 회계처리로부터 이탈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FRS 16 리스 제공자의 회계처리로부터 이탈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자산 판매거래에서 기초자산이 구매자에게 계속 인식되고 판매자에게서 제거될 수 있도록 기초자산의 통제 이전에 관한 지침이 리스 제공자와 리스 이용자 측면에서 마련됨</li> <li>(b) 기초자산이 리스 제공자와 리스 이용자 어디에도 인식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IPSASB에 IFRS 16의 리스 제공자의 금융리스 회계처리 지침을 포함(준용)하지 않음</li> <li>(c) IPASAB가 IFRS 16으로부터의 이탈을 결정할 경우 단일 모형(리스를 분류하지 않음)에 근거한 리스 제공자 회계처리 규정만 포함됨 (T/F에서 추후 개발 예정)</li> </ul> </li> </ul> </li> </ul>
<p>결론 도출 근거 (Appendix 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는 IASB의 리스 프로젝트에 대한 IASB의 주요 의결 결과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a) 리스 회계처리를 두 가지 모형으로 개발하거나 (b) 리스 제공자가 리스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구분해야 할 공공부분만의 개념적인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SB와 IPSASB의 리스 프로젝트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음</li> </ul> </li> <li>• IFRS 16 리스 제공자 회계처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 이용자의 회계처리는 '사용권(right-of-use)' 모형을 적용하며 리스 제공자의 회계처리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risks and rewards incidental to ownership)' 모형을 적용</li> <li>- 즉,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리스 제공자와 리스 이용자가 인식/제거 조건 등이 다른 두 가지 개념적 모형을 적용하고 있음</li> <li>- 리스 제공자는 리스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데 금융리스의 경우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반면, 운용리스의 경우 자산을 인식함</li> <li>- IPSASB는 IFRS 16의 리스 제공자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공공부분의 재무보고 목적을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 모형은 리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자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므로 자산에 대해 정보를 부족하게 제공할 수 있음</li> </ul> </li> </ul> </li> </ul>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p>(b) 공공부문 정보 이용자는 수익 중심의 민간부문 정보 이용자와 다른 정보를 필요로 함</p> <p>• IPSASB에서 IFRS 16으로부터의 이탈(departure)을 평가하기 위해 선정한 기준(criterion) 및 검토 결과</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31 582 694 621">기준(criterion)</th> <th data-bbox="694 582 1248 621">IPSASB view</th> </tr> </thead> </table>	기준(criterion)	IPSASB view
	기준(criterion)	IPSASB view	
	<p>1. IPSASB 개념체계의와의 일관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기초)자산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서비스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통제하고 있고 과거 사건의 결과라는 점에서 개념체계상 자산의 정의를 충족함</li> <li>- 따라서 리스자산의 인식은 개념체계에 부합함</li> </ul>	
	<p>2. IPSAS의 일관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으로 판매가 아니라면 리스 제공자는 리스자산의 사용권을 넘겨준 것이며 리스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 것이 아님</li> <li>- 따라서 리스자산의 제거는 현행 IPSAS에 부합하지 않음</li> </ul>	
<p>3. GFS와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FRS 16은 리스 이용자 회계처리에 사용권 모형을 적용하고 ED 64는 리스 이용자와 제공자가 모두 사용권 모형을 적용하므로 양자는 모두 GFS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li> <li>- 따라서 GFS와의 개념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GFS와의 관계는 IFRS 16으로부터의 이탈 의사 결정과 관련된 요인이 아님</li> </ul>		
<p>4. 공공민간파트너십과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 32의 사용수익권 모형과 IFRS 16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IFRS 16은 리스 이용자와 리스 제공자에 적용되는 모형이 다르나 IPSAS 32는 동일함</li> <li>(b) IFRS 16은 리스 제공자가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지만 IPSAS 32는 하나의 모형만 있음</li> <li>(c)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 제공자가 리스자산을 제거하지만 사업허가자는 자산을 제거하지 않음</li> <li>(d) 리스 제공자는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채권을 인식하지 않지만 사업허가자는 미수금을 인식함</li> <li>(e) 리스 제공자가 부채를 인식하는 경우는 없지만 사업허가자는 언제나 부채를 인식함</li> </ul> </li> <li>- 따라서 IFRS 16 리스 제공자의 회계처리는 IPSAS 32의 사용수익권 모형과 불일치함</li> </ul>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들이 제기한 다른 개념적 이슈</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31 458 655 497">이슈</th> <th data-bbox="655 458 1248 497">IPSASB view</th> </tr> </thead> </table>	이슈	IPSASB view
	이슈	IPSASB view	
	<p>1. 비교 가능성과 이해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 가능성과 이해 가능성의 질적 요소들은 다양한 차원을 가질 수 있으며, 정보 이용자 또한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각 차원마다 무게를 다르게 둘 수 있음</li> <li>- IPSASB는 특히 공공부문 리스 제공자가 금융리스 체결할 경우 리스자산이 공공부문 재무제표에 어디에도 인식되지 않는 문제점을 피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li> <li>- 따라서 비교 가능성과 이해 가능성은 관련 있는 이슈가 아님</li> </ul>	
	<p>2. 정보의 비대칭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 이용자와 리스 제공자가 동일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요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동일 국가 내 두 공공부문 실체 간의 리스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분명하고 비슷하다면 양자가 비슷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함을 의미함</li> <li>- 판매 또는 구매 거래에서 두 당사자가 모두 상품을 인식하거나 아무도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야 하는 것과 같이 사용권만 이전된 리스자산은 리스 제공자의 재무제표에서 제거되지 않아야 함</li> </ul>	
	<p>3. 이탈 근거의 충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는 각 국가에서 각 기준에 부여하는 중요성에 따라 상대적이므로 충분한 근거 기준은 평가 기준으로 적절치 않음</li> </ul>	
	<p>4. 거래의 경제적 실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자산의 사용권 이전은 리스자산의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판매)이 아니므로 리스 제공자는 리스자산을 제거하지 않아야 함</li> </ul>	
<p>5. 공공부문 리스의 민간부문과의 차이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리스는 경제적으로 동일하지만, IFRS 16 리스 제공자의 회계처리가 공공부문 정보 이용자들의 요구를 만족하는지 고려해야 함</li> <li>- IFRS 16을 적용하면 금융리스 계약 시 리스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li> <li>- 따라서 공공부문 재무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의 정보 이용자의 요구보다는 공공부문의 정보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함</li> </ul>		
<p>6.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s)과의 유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는 공동약정과 달리 리스자산에 대한 통제권의 공유가 없으며, 리스 제공자가 통제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용권만을 이전한 것임</li> <li>- 따라서 IPSAS 37, '공동약정'과의 유사성은 관련 요인이 아님</li> </ul>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6월 회의에서 IPSASB가 제기한 추가 이슈</li> </ul>		
	이슈	IPSASB view	
	1. 공공부문은 다른가?	- 이 문제는 다양한 차원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일부는 결론 도출 근거(안) 곳곳에서 다루고 있음	
	2. IPSASB와 IASB의 개념체계	- IASB는 리스자산에 포함된 권리와 리스채권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IFRS 16의 리스 제공자 회계처리 가 IASB의 개념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 - IFRS 16으로부터 이탈하는 경우 리스자산은 리스 제공자의 재무제표에 남지만, 실질이 판매인 경우에는 리스 이용자의 재무제표에 인식됨 - 이는 충실하게 표현된 대차대조표를 만들 수 있게 하며, 이러한 충실한 표현은 공공부문의 회계책임과 의사결정 목적에 매우 중요함	
	3. 리스자산의 일부나 전부가 제거되어야 하는가?	- 이론적으로 물리적 자산은 접근 권한, 사용 권한, 판매 권한 등 각종 권리의 집합체임. 그러나 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이러한 각종 권리를 분리하여 인식·측정하지 않으며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자산의 가치는 한 덩어리로서의 물리적 자산의 가치임 - 물리적인 부품들(예: 엔진, 바퀴)은 최초 인식 시 개별적으로 인식·측정되므로 교체되거나 부품 고유의 내용 연수로 감가상각될 수 있음. 그러나 물리적 자산을 권리로 나누는 것은 물리적 부품으로 나누는 것과 경제적으로 같지 않음 - 또한 개념적으로 물리적 자산에서 특정 권리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여러 실질적인 문제들(이전된 권리의 측정 등)을 일으킴	
	4. 이중계상	- IFRS 16으로부터의 이탈 의사결정과 관련된 요인이 아님	
	5. 공공 이익	- 다른 결론 도출 근거 초안의 부분에서 논의된 요인의 결실로 보아야 함	
6. 누가 리스자산을 통제하는가?	- 기초자산에 대한 사용권을 일정 기간 동안 이전한 것이며, 통제를 이전한 것이 아님 - 계약이나 구속력 있는 약정을 통한 통제의 이전은 실질적으로 판매 또는 구매에 해당하므로 IPSAS 17 등 타 IPSAS의 적용 대상임		

## 02

##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1 2019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함께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중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중간점검 항목은 작년과 달리 2018회계연도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무형자산 취득금액의 비용처리 오류 검토' 1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6개 항목을 점검할 예정이다.

각 회계·기금별로 6개 항목(전기오류수정손익 적정성, 지출금반금의 잡이익 계상 오류, 무형자산 취득금액의 비용처리 오류, 내부거래 제거, 건설 중인 자산 적정성, 계정과목 선택 오류)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보고서를 10월 24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단, 디브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내부거래 대상 자료를 디브레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자체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중간점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9월 26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설명회가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각 부처 담당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점검보고서를 취합·분석하여 부처별 점검 실적을 확인하고, 오류 조치율이 전년도 실적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11월 중 자체보고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무결산 중간점검 설명회(9.26),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

## 2 『2019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 및 한국재정정보원과 함께 『2019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을 발간하였다. 이번 책자는 작년에 발간했던 『2018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에 감사원 지적사항, 『국가회계편람』 개정사항 및 디브레인 시스템 개선사항 등을 새로이 반영하였다. 또한 올해부터 디브레인 시스템 관련 내용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이 공식적으로 발간에 참여하였으며,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결산담당자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쇄하되, ‘업무담당자용’은 ‘수입·지출’과 ‘국유재산·물품’으로 책을 나누어 인쇄할 예정이다.

결산담당자용은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와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 및 ‘결산업무 단계별 오류사례’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에서는 과거 8년간(2011~2018년) 감사원 지적사례를 분석하여 유형별, 중앙관서별로 통계자료를 제시하였다.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빈번히 발생한 지적사례 20개를 연례적 지적사례로 선정하여 각 사례별로 감사원 지적 발생원인과 점검 및 조치방안을 서술하였다. 2018회계연도에 발생한 감사원 지적건수의 87%가 연례적 지적사례에 해당하므로, 결산담당자가 이를 활용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한다면 감사원 지적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결산업무 단계별 오류사례'에서는 수정 전 시산표 마감 전부터 결산서 발행까지 결산업무 단계별로 발생하는 오류 유형 및 오류 정정방법 등을 제시하여 결산담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입·지출'과 '국유재산·물품'은 업무담당자가 디브레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시킨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및 오류정정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서술하여, 업무담당자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제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나 디브레인 게시판을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3 2019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제3~9차)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지난 3분기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개최하였다. 서울과 대전에서 개최하였던 지난 제1~2차에 이어 부산(제3차), 대구(제4차), 광주(제5차), 서울(제6차, 제9차), 제주(제7차), 원주(제8차)에서 차례대로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국가회계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특히 원주와 제주를 제외한 차수에 교육 신청 정원(100명)을 초과하여 국가회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과정은 차수별로 국가회계이론과정 2일, 국가회계실무과정 1일 등 총 3일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국가회계이론과정 1일차에는 진회계법인의 이재혁 회계사와 한길회계법인의 김상노 회계사가 차수별로 돌아가며 회계원리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기초에 대해서 국가회계를 처음 접하는 대상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이어서 기획재정부의 박성동 국장이 국가회계제도의 주요 체계와 발생주의 국가회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2일차에는 이정지율회계법인의 허용 회계사가 세업 세출거래와 복식부기, 결산조정과 발생주의에 대한 내용을 이해시키고, 마지막으로 2일간의 전체 교육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종합사례연습을 학습자들과 함께 진행하며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3일차인 국가회계실무과정의 오전 시간은 수입·지출(제3~5차, 제7~9차)과 국유·물품(제2차, 제6차)으로 구분하여 각 담당자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오류사례를 미리 점검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센터의 회계사들이 강의를 진행하였다. 뒤이어 '국가재무제표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회계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그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교육이 마무리되었다. 특히 센터에 신규로 합류한 회계사들도 같이 국가회계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센터의 강사 풀이 더욱 풍부하게 확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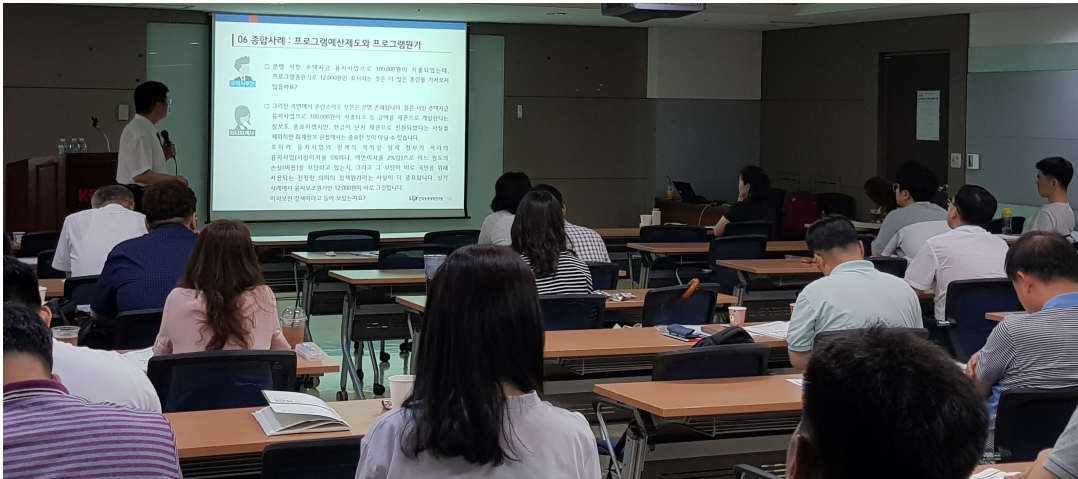


〈국가회계 전문교육 제9차시(9.27), 서울 섬유센터 컨퍼런스홀〉

#### 4 국가회계의 정책적 활용 Pilot 과정 실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주관하는 신규 교육 과정인 국가회계의 정책적 활용 Pilot 과정이 지난 7월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되었다. 국가회계의 정책적 활용 Pilot 과정은 공무원이 국가재정에 관련된 정책적 의사결정 시,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올해 처음 개설된 과정으로 ① 국가회계정보와 결산보고서 ② 자산, 부채, 그리고 재정상태표의 해석 ③ 프로그램세 출과 프로그램원가, 그리고 재정운영표의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43명이 참여한 본 과정은 교육 전반적인 만족도는 4.56점(5점 만점), 업무 도움 여부는 4.48 점, 내년도 동일 과정 수강 희망 여부는 4.44점으로 교육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피드백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국가회계 전문교육의 정규과정으로 편성하여 올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회계의 정책적 활용 교육(7.30),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2층 회의실〉

## 5 2019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재무결산실무 과정)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9회계연도 국가재무결산을 앞두고 오는 10월과 11월에 중앙부처 재무결산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국가회계 전문교육(재무결산실무 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과정은 재무결산 절차 및 유의사항 등 교육을 통해 2019회계연도 재무결산 업무 수행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 참석자는 본 교육을 통해 올해 국가결산의 방향과 주요 오류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등을 학습하게 된다. 교육 1일차에는 '①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 ② 국가재무결산의 이해 ③ 수정 전 시산표 마감 전 유의사항'을, 2일차에는 '① 내부거래제거 실무 ② 결산조정분개 ③ 결산보고서 작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 강사로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본 센터 결산교육팀 연구진이 참여한다. 결산교육팀은 국가결산 업무와 국가회계교육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작년에 신설된 조직으로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회계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서울과 세종에서 각각 2일간 진행되며,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http://edu.kipf.re.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무결산실무 과정 일정〉

지 역	일 정	시 간	장 소	정 원
서울	10. 31.(목) ~ 11. 1.(금)	09:30 ~ 17:30	양재 aT센터	100명
세종	11. 7.(목) ~ 11. 8.(금)	09:30 ~ 17:30	세종컨벤션센터	100명

〈재무결산실무 과정 커리큘럼〉

일 자	교육과목	시간	주요 내용
1일차	2019회계연도 결산 개요	1.0	1. 기준개정사항, 조직개편 관련 사항 등
	국가재무결산의 이해	2.5	1. 국가재무결산 개요 및 절차 2. 세입세출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비교 3.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 4. 국가재무제표의 이해
	수정 전 시산표 마감 전 유의사항	3.5	1. 재무장부 조회 및 점검 방법 2. 수정 전 시산표 마감 및 유의사항
2일차	내부거래실무	1.5	1. 내부거래의 의의 2. 내부거래 제거방식 3. 결산담당자 유의사항 및 처리방법
	결산조정분개	2.0	1. 국가회계 결산조정분개의 이해 2. 결산조정분개의 유형과 결산조정분개 사례 3. 국가회계 결산보고서 작성(결산조정분개)
	결산보고서 작성	3.5	1. 결산작성지침 개요 2. 결산보고서 생성방법 및 유의사항 3. 총잉여금, 재정운영결과조정표, 자산부채조정명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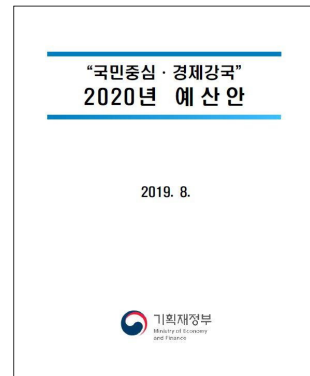
# 03

## 재정통계 동향

### 1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 가. 2020년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는 2019년 8월 29일(목),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2020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①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② 혁신성장 가속화, ③ 경제 활력 제고, ④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⑤ 생활 편의·안전·건강 증진 분야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 1) 재정 총량

2020년 국세수입의 경우 재정분권, 반도체 업황 둔화 등으로 감소가 예상되지만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 세외수입 증가로 인해 총수입은 1.2% 증가가 전망되며, 총지출은 국내외 경제상황, 세입 여건·세출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년 대비 9.3% 증가한 513.5조원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Delta 1.7\%p$ )는 악화되고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 2.7%p)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조원, %)

구 분	2019년 <sup>1)</sup> (A)	2020년 <sup>1)</sup> (B)	증감(B-A)	
				%
◇ 총수입	476.1	482.0	5.9	1.2
- 국세	294.8	292.0	$\Delta 2.8$	$\Delta 0.9$
◇ 총지출	469.6	513.5	43.9	9.3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Delta 37.6$ ( $\Delta 1.9$ )	$\Delta 72.1$ ( $\Delta 3.6$ )	$\Delta 34.5$ ( $\Delta 1.7\%p$ )	$\Delta 91.7$
◇ 국가채무 (GDP 대비 %)	740.8 (37.1)	805.5 (39.8)	64.7 (2.7%p)	8.7

주: 1) 2019년은 본예산, 2020년은 예산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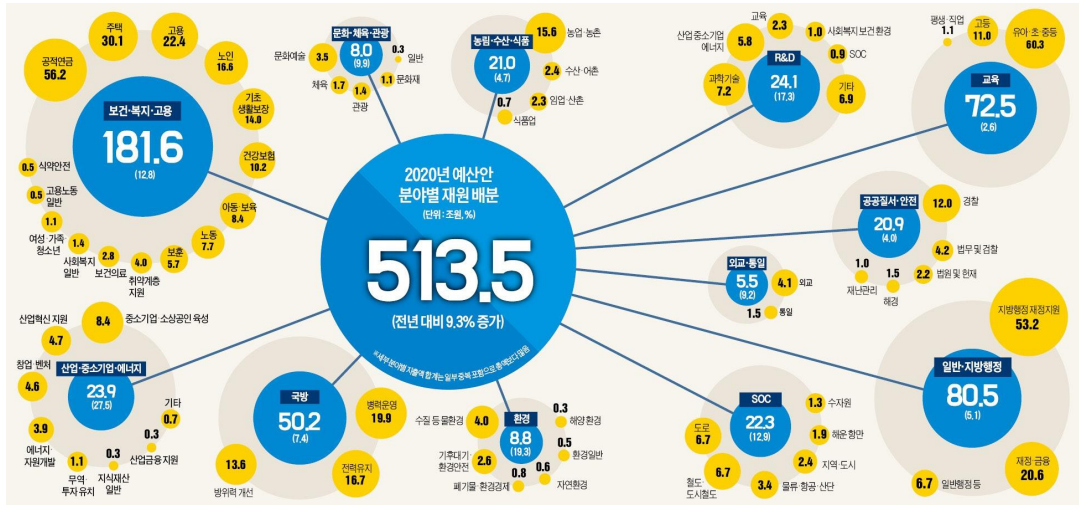
2) 분야별 자원배분

기획재정부는 늘어나는 예산을 주로 혁신성장 가속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R&D, 산업·중소·에너지, 환경, SOC 분야 증가율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분야별 자원배분은 다음과 같다.

(단위: 조원, %)

구 분	2019년 <sup>1)</sup> (A)	2020년 <sup>1)</sup> (B)	증감(B-A)	
				%
◆ 총지출	469.6	513.5	43.9	9.3
1. 보건·복지·노동	161.0	181.6	20.6	12.8
2. 교육	70.6	72.5	1.8	2.6
3. 문화·체육·관광	7.2	8.0	0.7	9.9
4. 환경	7.4	8.8	1.4	19.3
5. R&D	20.5	24.1	3.6	17.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8	23.9	5.2	27.5
7. SOC	19.8	22.3	2.6	12.9
8. 농림·수산·식품	20.0	21.0	0.9	4.7
9. 국방	46.7	50.2	3.5	7.4
10. 외교·통일	5.1	5.5	0.5	9.2
11. 공공질서·안전	20.1	20.9	0.8	4.0
12. 일반·지방행정	76.6	80.5	3.9	5.1

주: 1) 2019년은 본예산, 2020년은 예산안 기준



출처: 한국경제신문, 「경제활력에 70조 투입 ... 복지예산 181조, 3년연속 10%대 증가」, 2019. 8. 30.

2020년 분야별 자원배분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보건·복지·노동, 교육, 일반·지방행정, 국방, SOC 등 모든 분야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기획재정부는 2019년 8월 29일(목),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계획에 따르면 재정수입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세수 증가세의 제약이 전망되지만 2021년 이후에는 세계경제 회복, 혁신성장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지속함에 따라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2018~2022년 계획(연평균 6.1%)보다 감소한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지출은 경제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 등 구조적 과제 해결 및 삶의 질과 국민안전 개선을 위한 지출소요가 확대될 전망이며, 연평균 6.5% 증가하는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재정수지는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GDP 대비 △3% 중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 조원, %)

구분	2019년 <sup>1)</sup>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재정수입	476.1	482.0	505.6	529.2	554.5
재정지출	469.6	513.5	546.8	575.3	604.0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6.5 (0.3)	△31.5 (△1.6)	△41.3 (△2.0)	△46.1 (△2.1)	△49.6 (△2.2)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37.6 (△1.9)	△72.1 (△3.6)	△81.8 (△3.9)	△85.6 (△3.9)	△90.2 (△3.9)
국가채무 (GDP 대비, %)	740.8 (37.1)	805.5 (39.8)	887.6 (42.1)	970.6 (44.2)	1,061.3 (46.4)

주: 1) 2019년은 본예산 기준

#### 다.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기획재정부는 2019년 9월 3일(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작성 대상인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총자산은 LH·한전·도로공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 인프라가 확충되어 2019~2023년간 자산은 143.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부채 비율은 2023년 168%로 전망하였다.

(단위: 조원, %)

구분		2018년 (실적)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19~2023년 중장기	자산	766.2	792.0	818.7	860.7	901.8	935.0
	부채	479.0	498.9	511.5	538.9	565.9	586.3
	부채 비율	167	170	167	167	168	168

## 2 2018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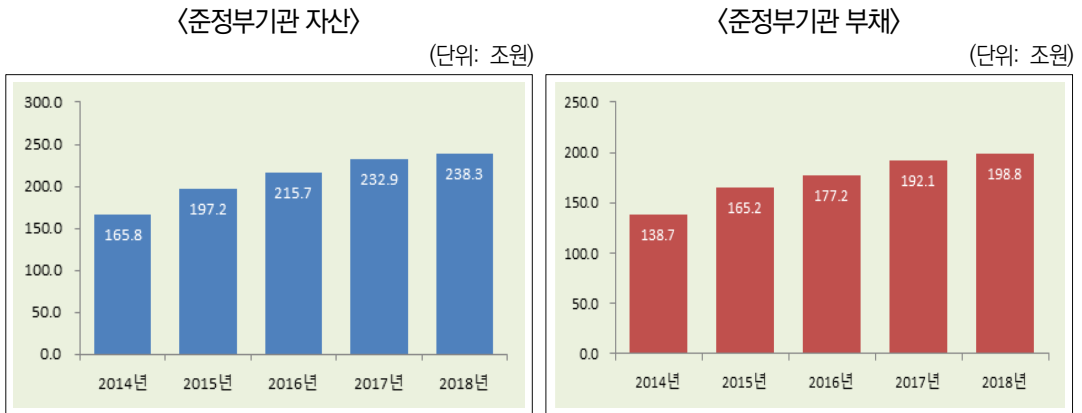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산을 수행하고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하게 된다. 2018회계연도 결산 대상 준정부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89개 기관이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9년 8월 국회에 제출된 2018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서 내용을 바탕으로 결산 결과를 분석하였다.

2018회계연도 준정부기관의 자산은 238.3조원, 부채는 198.8조원이며, 매출액은 147.6조원, 당기순손실은 1.4조원이다.

### 가. 자산과 부채

준정부기관의 자산 및 부채의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주: 준정부기관 대상 변동 및 회계기준 변경 등으로 재무제표가 재작성되어 전년도에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와 일부 차이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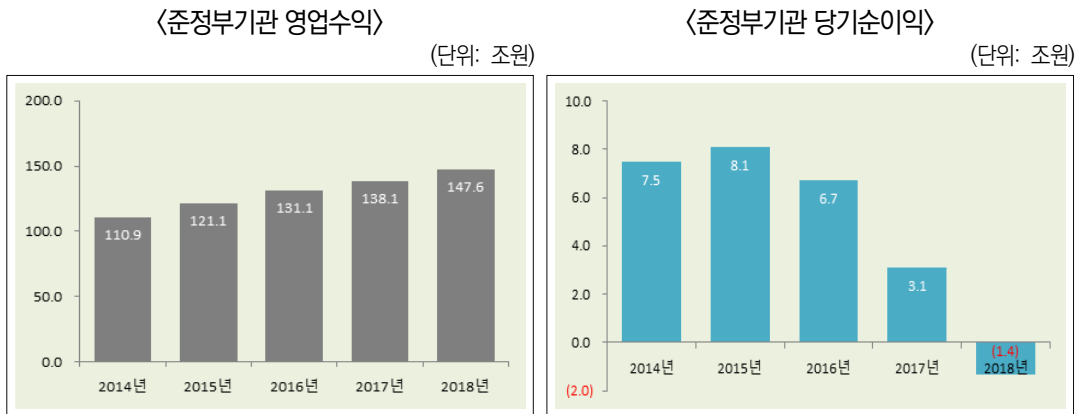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준정부기관의 자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대출채권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2018회계연도 기준 준정부기관 총자산의 51.8%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차지하고 있고 총자산 변동액 5.3조원 중 3.9조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산변동에 따른다.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급여충당부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상승 추세이다.

### 나. 영업수익과 당기순이익

준정부기관의 영업수익 및 당기순이익의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주: 준정부기관 대상 변동 및 회계기준 변경 등으로 재무제표가 재작성되어 전년도에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와 일부 차이가 발생함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준정부기관의 영업수익은 꾸준한 상승 추세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영향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건강보험료율 인상, 직장가입자 수 증가 및 보수월액 상승 등으로 보험료수익<sup>1)</sup>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로 인해 출연금 수익<sup>2)</sup>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 2014년(44.3조원), 2015년(47.2조원) 2016년(50.7조원), 2017년(53.7조원), 2018년(57.8조원)

2) 2014년(14.2조원), 2015년(15.7조원) 2016년(17.6조원), 2017년(19.6조원), 2018년(21.3조원)

준정부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6년 이후 의료수가 인상 및 의료보장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영업비용 증가로 인해 준정부기관의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영업비용 증가율이 영업수익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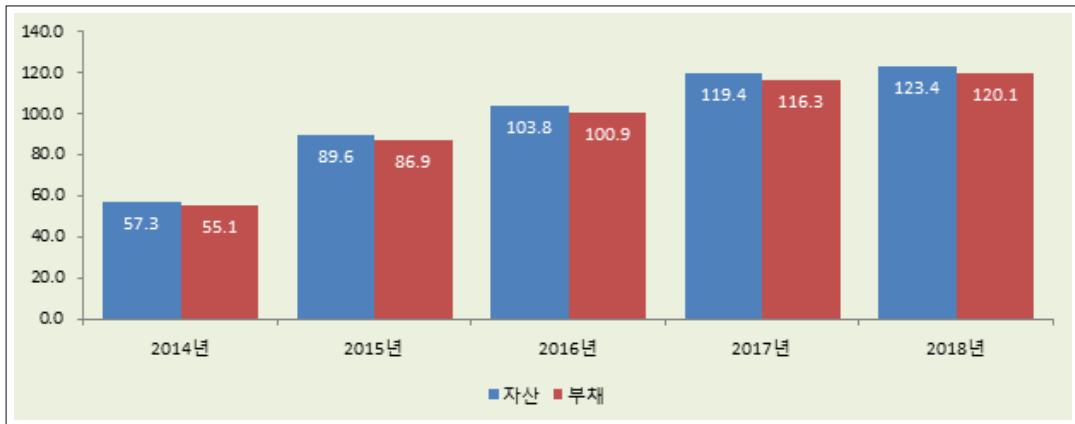
### 다. 주요 준정부기관 증감 분석

#### 1)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8회계연도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51.8%, 총부채 중 6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자산·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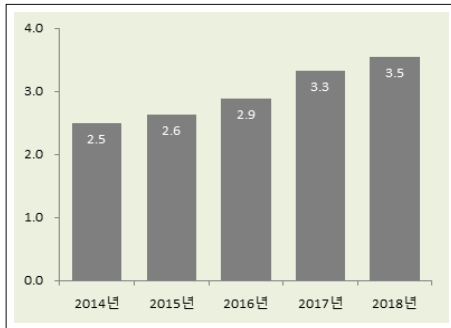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저금리,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시행으로 자산과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다.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의한 대출채권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발행으로 유동화부채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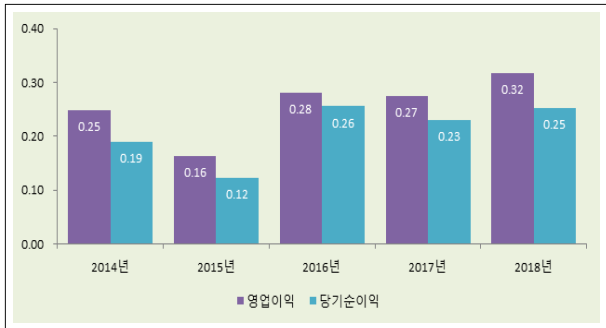
〈영업수익〉

(단위: 조원)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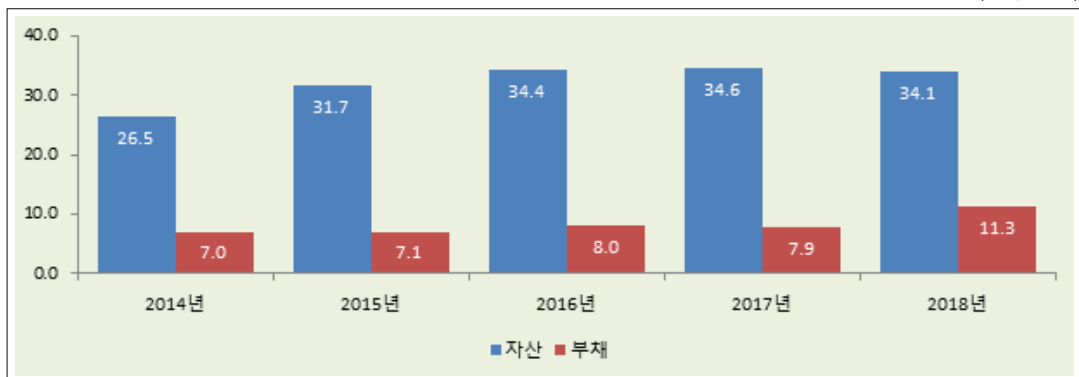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대출채권 이자수익이 늘어 영업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유동화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도 동시에 증가하여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정책모기지 공급에 따른 순이자이익 증가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다.

## 2)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회계연도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14.3%, 총부채 중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자산 · 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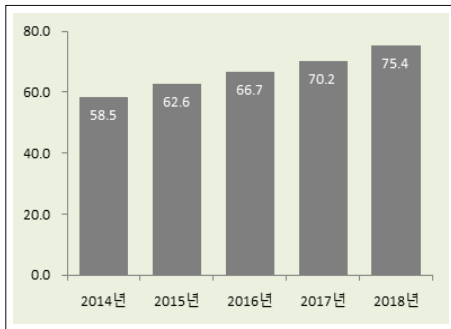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수입 증가 등으로 자산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의 경우 자산은 소폭 감소하였고 보장성 확대에 의한 보험급여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부채는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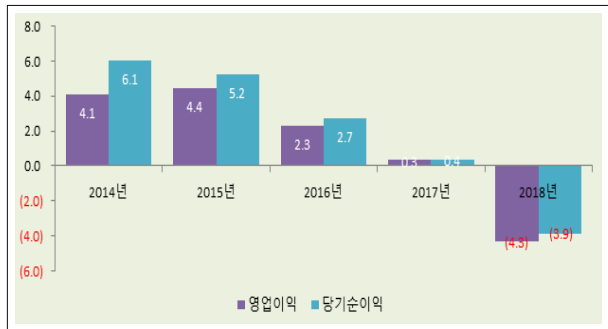
〈영업수익〉

(단위: 조원)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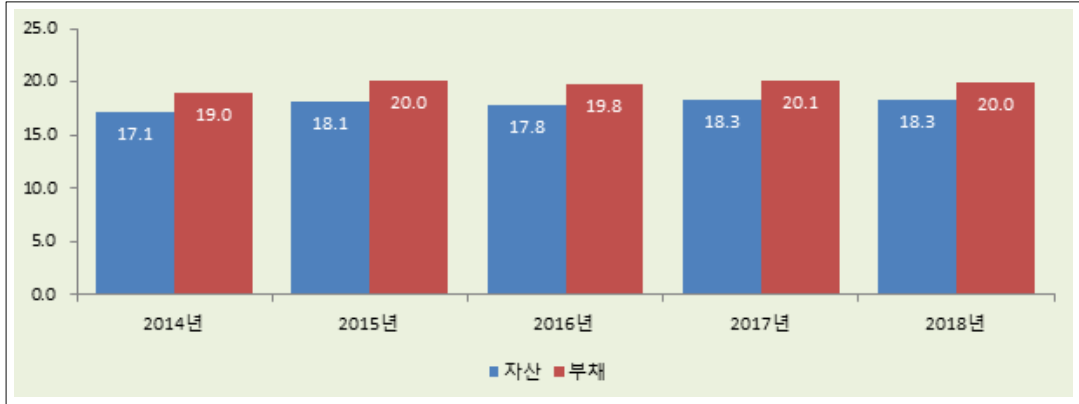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수 증가 및 보수월액 상승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수가 인상 및 의료보장 확대에 따라 영업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업비용 증가율이 영업수익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영업수익 증가분에 비해 보장성 확대에 의한 보험급여 관련 비용 증가로 영업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로 전환하였다.

### 3)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8회계연도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7.7%, 총부채 중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자산·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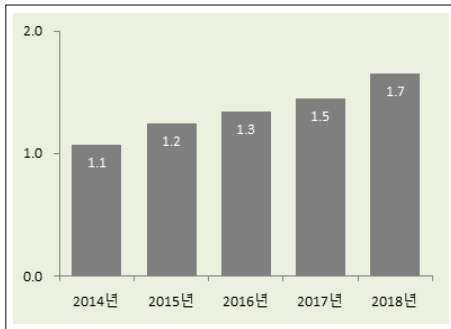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비유동자산이 자산의 97.7%를 구성하며, 대부분 유형자산(건축물 및 건설 중인 자산 등)과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 등 용역운영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 및 부채는 고속철도 자체 사업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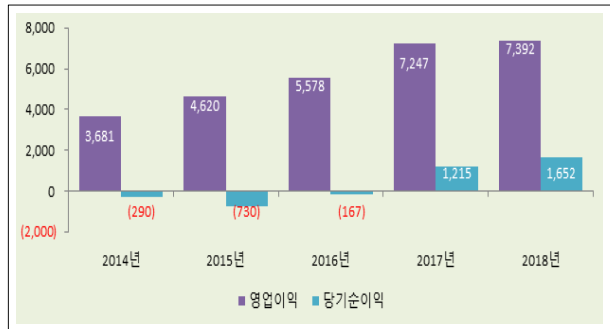
〈영업수익〉

(단위: 조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영업수익은 선로 사용료 및 임대수익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속철도 순선로 사용료(선로 사용료에서 관련 유지·보수비용을 차감)가 고속철도 자체 사업비 조달을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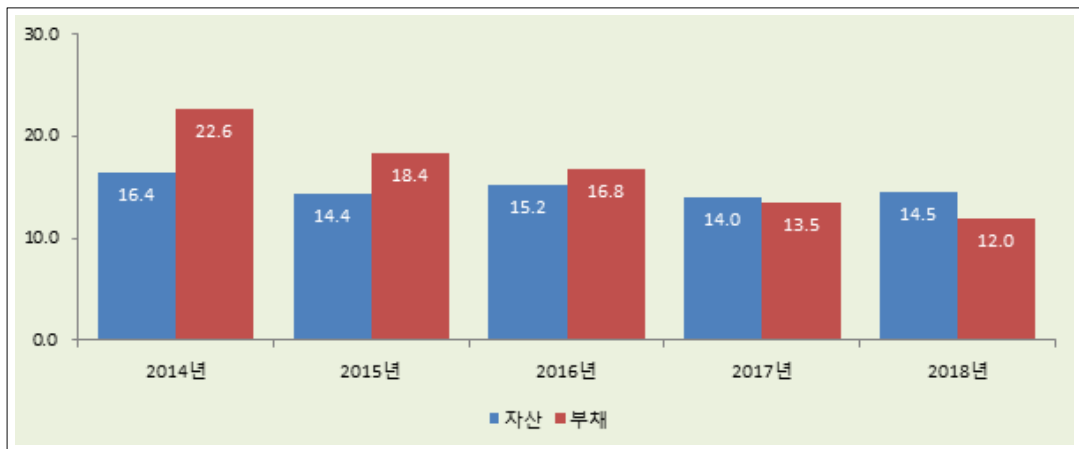
한 채권 이자에 미달하여 2016년까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2017년에는 철도 운영자 경쟁체제 도입(SR 운영) 및 수서발 고속철도의 이용객 증가로 인해 선로 사용료가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일반철도 선로 사용료 인상과 임대수의 증가 등으로 영업수익,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다.

#### 4)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2018회계연도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6.1%, 총부채 중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자산·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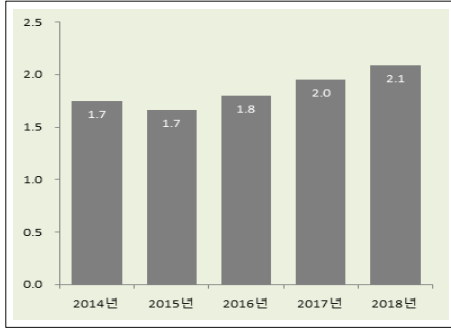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예금보험공사의 자산은 큰 변동이 없으나, 부채의 경우에는 2011년 이후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부채가 증가하여 2016년까지 자본잠식 상태였다. 예금보험료, 파산배당, 이월자금 등으로 발생한 자금으로 지속적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여 2017년에는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발생한 예보기금의 순자산 부족 상황이 6년 만에 해소되었다. 2018년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으로 자산이 증가하고 금융부채 상환 등으로 부채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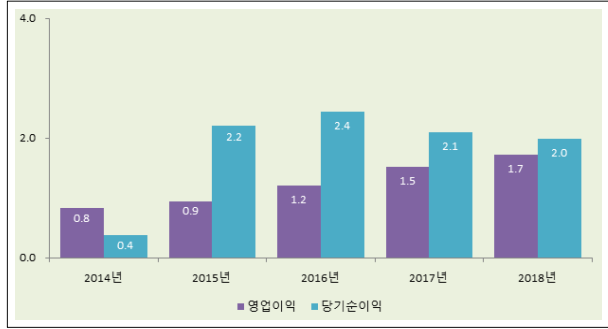
〈영업수익〉

(단위: 조원)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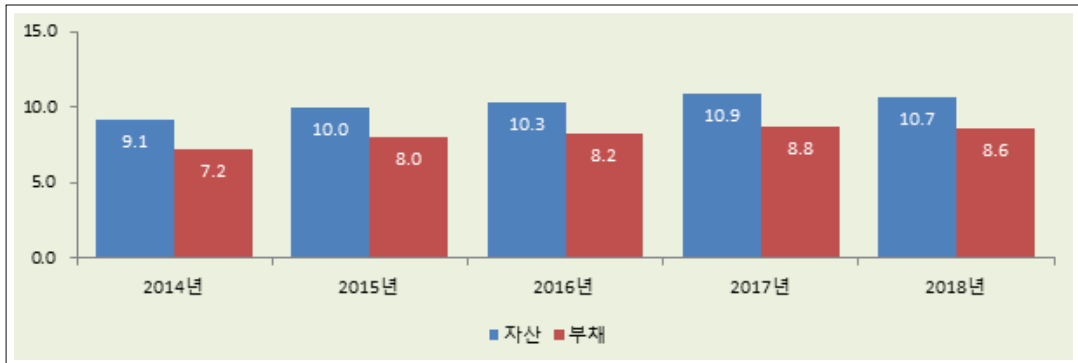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수익 및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영업수익은 증가 추세이며, 지속적인 금융부채 상환으로 이자비용이 감소하여 영업이익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 5)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회계연도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4.5%, 총부채 중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자산 · 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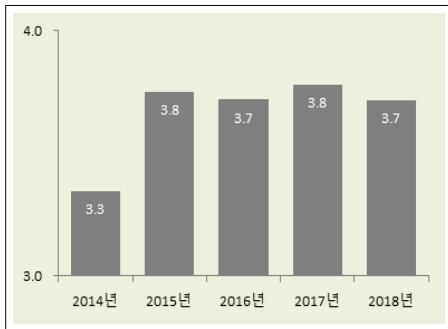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진흥청의 종전부동산 개발사업 및 농지은행 사업 확대로 인해 자산이 증가 추세이고, 이에 따른 사업비 조달을 위한 사채 발행으로 부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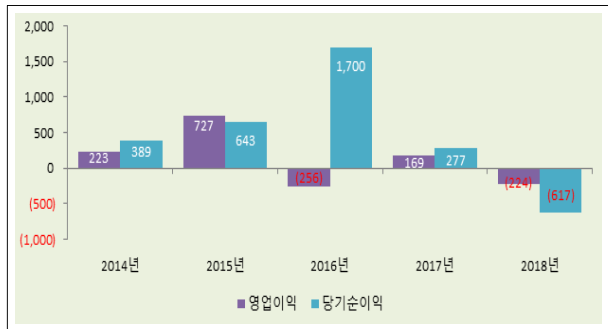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조원)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국농어촌공사는 4대강 사업 종료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2014년을 제외하고는 용수관리 및 생산기반사업 등 사업량 변동으로 인한 매출이 변동하고 있으나 큰 변화는 없는 추세이다. 2016년에는 구사옥 매각에 따라 일시적인 영업외수의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영업이익 감소 및 법인세추납액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각 자료는 국회에 제출된 기관의 재무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기금계정 재무정보 및 재무제표 재작성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된 자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현황과 결산

#### 가.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현황

기획재정부는 2019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총 339개 기관을 2019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변경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5	36	+1			+1
■ 시장형	15	16	+1			+1
■ 준시장형	20	20	-			-
② 준정부기관	93	93	-			-
■ 기금관리형	16	14	△2			△2
■ 위탁집행형	77	79	+2			+2
③ 기타공공기관	210	210	-	+7	△6	△1
계	338	339	+1	+7	△6	-

구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신규 (+7)	해수부	한국해양진흥공사	기타공공기관
	복지부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농림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환경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국토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구 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해제 (△6)	해수부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지정 해제
	고용부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문체부	(재)정동극장	
	법무부	IOM 이민정책연구원	
	과기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유형 변경 (10)	해수부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
	국토부	주식회사 에스알	기타공공기관 → 준시장형 공기업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문체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산업부	한국세라믹기술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중기부	창업진흥원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2019. 1. 30.

##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절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는 기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사원총회 등의 승인 의결로 확정하고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K-IFRS에 따라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 규칙에 따라 회계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여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후 3월 말까지 승인을 얻어 확정해야 한다. 그리고 준정부기관(공기업 중 사원총회 의결기업 포함)은 결산서를 확정할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주무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제출한 결산서를 승인·확정하여 5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하고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에 감사원 결산 검사 결과(7월 31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8월 20일)해야 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일정 요약〉

결산서 제출	결산서 승인	감사원 제출	감사원 → 기획재정부 송부	국회 제출
2월 말	3월 말	5월 10일	7월 31일	8월 20일

2019년에는 주식회사 에스알이 신규 공기업으로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재)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창업진흥원이 신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K-IFRS에 의거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04

## 공익법인회계 동향

## 1 공익법인회계기준 전문가 간담회

2017년 12월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제정되고 2018 회계연도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들은 새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 실무 이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개정을 위해 개최한 것이 아니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며 발생하는 이슈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 가. 개요

- 일시: 2019. 7. 17(수) 14:00~17:00
- 장소: 서울지방조달청 10층 중회의실
- 참석자: 배원기(홍익대학교 교수), 양정아(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 최호윤(삼화회계법인 이사), 변영선(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박승효(국세청 법인세과), 박윤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직무대리)



〈공익법인회계기준 전문가 간담회(7.17), 서울지방조달청 중회의실〉

## 나. 발표 및 논의 내용 요약

### 1)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

- 기부금으로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과 달리 정부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기타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의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여부
- 상증세법 개정에 따른 공익법인 범위 변동에 따라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의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여부

### 2) 구분회계

-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으로 재무제표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이 어렵고, 기존 세법에 따라 구분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 (논의 1) 구분회계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며 실질적으로 구분이 용이하지 않다면 구분회계를 하는 필요성 유무
  - 기타사업의 구분 정보를 별도의 열로 구분하기보다 행으로(사업수익, 비용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는 방법 고려

- 외국에서는 공익사업 부문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는 사례가 없으며 회계적으로는 구분 없이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세무 목적상 구분하는 정보는 따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익사업 부문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회계정보 유용성에 도움이 됨
- (논의 2) 적극적인 투자활동은 기타사업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활동의 범위에 대해 논의
- (논의 3) 주된 사업의 종된 사업 구분방식 명시 필요
  - 협회지에 게재하는 광고수익과 같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의 경우 주된 사업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명시 필요

### 3) 기본순자산

- 기본순자산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기본순자산에 순자산과 재산(제약 여부)의 개념이 혼재되어 이슈가 발생함
- (논의) 기본순자산의 정의를 그대로 유지해도 좋을지, 아니면 다른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
  - 기본재산에 대한 평가항목을 모두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도록 하면 기본재산과 기본순자산 개념 충돌이 보완될 수 있음
  -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유사하게 순자산을 영구적 제약과 일시적 제약을 구분하는 방안 고려
  - 기본재산의 개념과 기본재산이 아니더라도 사용이나 처분에 제약이 있는 자산을 포함하여 기본순자산으로 인식

### 4) 비용의 분류체계

- 현재 비용 분류체계가 단순화되어 세부 내용 파악이 용이하지 않음
  - 최초 도입하는 시점에는 대분류 관점으로만 정의하고 세부 내용은 자율로 하였는데 세부 내용 기재가 강제되지 않아 대부분의 기관에서 세부 내용 기재를 하지 않음
- (논의 1) 분배, 인력, 시설, 기타비용의 하위 세부계정 규정에 대한 논의
  - 하위 세부계정(중분류)은 자유롭게 기재하되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을 개선
  - 비용의 기능별 분류 주석을 추가하면 사업에 대한 비용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음

- (논의 2) 분배비용을 장학금, 지원금 등 직접 지급하는 비용이지만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분배비용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어 비용의 성격별 분류 세분화에 대해 논의
  - 현물 지원, 서비스 지원으로 구분하게 되는 경우 현물과 서비스의 구분 기준이 모호하여 혼동이 될 수 있음
  - 현금이나 재화가 이전되고 귀속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경우에만 분배비용으로 인식
  - 현재 많은 공익법인이 프로그램 진행 같은 외주용역비를 분배비용에 포함하는데 이를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5) 재무제표 서식

-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간의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현재 서식상 재무제표에 이를 별도로 표시할 수 없으며, 공익법인마다 재무제표 작성방법에 차이 발생
- (논의) 내부거래 표시 열 추가방안 논의

#### 6) 정부보조금

- 정부보조금을 기부금과 동일하게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규정으로 마련할 필요성 여부 및 보조금과 기부금의 성격 차이로 인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 7) 기타 논의사항

- 위·수탁 시설의 운영성과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
  - 법인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인 경우 포함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단위별로 결산 시점이 다른 회계의 통합에 대한 지침 필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익처분의 개념이 아닌 제약 조건을 부가/해제하는 관점에서 연도 중에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
- 자산총액 100억 미만의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의 재무정보 강화를 위하여 국세청 공시양식에 주석정보를 추가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

## 2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8월 27일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기관이 국세청으로 일원화되고, 의무지출 및 의무공시 적용 공익법인 범위가 확대되는 등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중 공익법인 회계와 관련하여 변동되는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의무공시대상 공익법인 확대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면 2020년부터 모든 공익법인이 의무공시 대상이 된다. 다만 공시 수준은 자산규모나 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차등화할 계획이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결산서류 등* 공시 대상 공익법인 *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공시 대상 공익법인 확대 • <b>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b> - 다만,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양식* 사용 * 수입금액 5천만원 이하 공익법인은 차등하여 보다 간소화된 양식 사용
<input type="checkbox"/> 위반 시 가산세 부과 • 자산총액 × 0.5%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좌 동) - 다만, 간편양식 적용 법인의 경우 2023년까지 가산세 미부과

출처: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19.

## 2) 공시의무의 강화

공익법인의 공시의무사항에 재무제표 주석 기재사항이 추가된다. 현재는 주석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공익법인의 경우 주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주석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면 정보 이용자들이 추가적인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15개의 필수적 주석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무제표 작성자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주석을 추가 기재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취득 등 내용 •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자와 해당 주식 법인의 관계 등 •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공시의무 사항 추가 ] • (좌 동)  • 재무제표 주석기재사항

출처: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19.

## 3)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2020년부터 자산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뿐 아니라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정도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 * 종교법인·학교법인 제외 • 자산 100억원 이상  <추 가>	<input type="checkbox"/>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 (좌 동) •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위반시 가산세 부과 • 수입금액 × 0.07%	<input type="checkbox"/> (좌 동)

출처: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19.

#### 4)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감리제도 도입

공익법인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와 외부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회계감리제도가 도입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공익법인이 일정 기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뒤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회계감리제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계 감리 후 감사 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면, 금융위에서 감사인을 제재하게 된다. 감리제도의 구체적 방안은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규모 이상 공익법인*은 일정 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인 외부 감사 대상 공익법인</li> <li>** (예) 6년 자유선임 + 3년 국세청장이 지정</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재부장관이 회계 감리* 후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은 금융위에 통보, 금융위에서 감사인 제재</li> <li>• 회계 감리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규모·지정기간, 감리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li> </ul> </li> </ul>

출처: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19.

# 05

## 오피니언

### 1 공공부문회계의 기준 간 국제적 조화



심재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명예교수

#### 1. 들어가는 말

공공부문회계(public sector accounting)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노력은 30여 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86년에 국제회계사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IFAC)에 공공부문위원회(Public Sector Committee: PSC)가 설치되었다. 이후 PSC를 대체하여 2004년에 독립된 회계제정기구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IPSASB)이 설립되었으나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IPSAS)을 채택한 국가는 소수였고, 국제적 관심과 수용을 크게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와 공공부문회계에서 국제적 조화(harmonization 또는 convergence)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IPSAS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2015년부터 IPSASB가 마련한 미래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 유럽에서 발생한 국가채무위기가 도화선이 되어서 2015년에 유럽연합(EU)이 유럽공공부문회계기준(European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EPSAS)의 제정 및 채택을 선언하고, 개발 작업에 들어간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EPSAS의 개발을 위한 적합한 준거의 틀로(reference framework) 채택된 것은 IPSAS였다. 따라서 현재 국제비교정부회계연구(comparative

international governmental accounting research: CIGAR) 네트워크를 비롯한 유럽의 정부회계 및 실무계에서는 IPSAS와 EPSAS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II. IPSAS의 영향력 확대 추세

IPSAS는 창립 이후 국제 및 국가의 공공부문화계 간 convergence와 회계와 통계의 convergence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국제적 조화와 통일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IPSAS는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수용되지 못했고, 실제로 IPSAS를 완전 채택한 국가는 소수였다.

IPSAS라는 국제회계기준이 고품질의 회계기준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택이 잘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각국의 역사, 가치관, 법적·정치적·경제적 제도 등 정부회계환경이 달라서 오는 등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채택의 효익에 대한 판단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IPSASB는 2015년부터 미래전략으로 세계적으로 발생 기준 IPSAS의 채택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관리 및 지식을 강화한다는 단일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① 고품질의 공공부문 재무보고 기준의 개발, ② 공공부문에 대한 다른 문건의 개발, ③ IPSAS 인지도와 채택 효익(benefits)의 제고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이후 IPSAS의 채택은 전 세계에 걸쳐 추진력을 얻고 있다. 특히 EU는 2015년에 IPSAS에 근거한 EPSAS의 설립과 채택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와 호주는 이미 IFRS에서 공공부문을 위한 IPSAS형 기준으로 전환했다. 또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에서의 지지성명서는 저개발국가들의 채택 추세를 촉진했다. 그 결과 이 지역 상당수의 국가들이 IPSAS를 채택했거나 채택 과정에 있다.

## III. EPSAS의 도입 경과

유럽국가들의 IPSAS의 채택에 대한 관심은 2008년 국가채무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비교적 저조한 편이었으나, 위기 이후에야 관심이 커졌다. 즉, 유럽의 국가채무위기는 회원국의 회계 간의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의 결여, 정부회계와 재정통계 간의 불일치가 거시경제의 안정성, 감시와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일부 회원국들의 공공부문화계의 상황이 중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EU는 재정을 회복하고, 좀 더 효과적인 공적 서비스의 제공, 납세자의 공적자금에 대한 좀 더 나은 수탁관리를 보증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더 큰 투명성(transparency)과 회계보고책무(accountability)의 확보가 필요하며, 미시 수준에서 공공부문화계의 조화가 거시 수준에서 더 나은 재정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EU 회원국들도 이러한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한 그들의 의사결정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발생주의회계 체계의 채택을 고려하면서 공공부문회계의 국제적 조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미 EU 회원국들 중 상당수가 자국의 예산 및 회계시스템을 발생주의체제로 개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15개 EU 회원들이 IPSAS와 일부 연결되어 있다. 9개국은 IPSAS에 기준한 국가회계 기준을 갖고 있고, 5개국은 준거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1개국은 지방정부에서 일부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과정에서 조정되지 않아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비교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다. 유럽의 예산 및 회계시스템의 이질성은 국가 간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답은 발생주의 예산 및 회계원칙에 기준한 EPSAS를 도입하는 것이다.

2011년에 EU이사회는 EU의 경제적 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식스 팩(Six-Pack)을 채택했는데 여기에서 EC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을 위해 IPSAS의 적합성(suitability) 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고, EU의 통계청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평가 작업을 수행했다.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EC는 2015년에 조화된 EPSAS를 채택하기로 공식 선언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 접근법을 취해 개발하기로 했는데, 회원국의 공공부문의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만들기 위한 적합한 준거의 틀로서 기존의 IPSAS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 간의 경과를 보면 2012년 2월에 유로스타트는 회원국에 대한 IPSAS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적협의(public consultation)를 시작했고, 2013년 3월에 유럽집행위원회는 추가적으로 회원국에 조화된 공공부문회계기준 시행에 대해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유럽집행위원회는 일반적으로 IPSAS는 EPSAS의 개발을 위한 적합한 준거의 틀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나 IPSAS의 적합성에 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EU에서 시행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2015년에 EU는 EPSAS의 제정 및 채택을 선언했고, 2단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1단계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IPSAS와 같은 발생주의회계를 촉구함으로써 중단기적으로 회원국의 재정투명성(fiscal transparency)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EPSAS 체계(예를 들면, EPSAS의 지배구조, 회계원칙 및 기준)를 개발하고, 2단계는 2025년까지 EPSAS를 시행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회원국 국내와 회원국 간의 비교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EPSAS는 공공부문 실체에 의한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질을 개선하여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자원배분결정에 대한 평가에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활동의 효율성, 효과성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회계보고 책임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IV. 공공부문의 국제적 조화의 효과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국제적 조화의 효과는 민간부문에서 다국적 기업이나 자본시장에서 얻는 효과에 대한 논거처럼 명확하지 않아 조화에 대한 강력한 유인이 없다고 주장된다. 이에 대해 Brusca and Condor(2002)는 국제적 조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국제시장에서 공채를 발행하고,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요청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무활동에 외부화(externalization)가 필요하다.
2. 거시경제회계(macroeconomic accounting)의 정교화 및 비교 가능성에 도움이 된 공공회계 시스템이 동일한 경우 국가회계(national accounting)의 정교화에 큰 도움이 된다.
3. 다른 국가의 정보를 사용하는 국제기구가 공공기관의 정보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 IMF, 유럽투자은행은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유사한 방법으로 차관의 위험성을 분석할 수 있다.
4. 국제적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을 끌고 갈 수 있다. 그것은 준거(reference)로서 표준을 알아야 하는 OECD나 EU 기관과 같은 초국가적 공공기구들에 유용하다. 그것들은 또한 회계시스템을 현대화하길 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준거로서 기여한다.
5. 저개발국의 회계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화과정은 특히 전통적 회계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공공회계 정보의 개선을 위한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로써 개혁과 현대화로 나갈 수 있다.

#### V. 맺는 말

우리나라는 2007년에 지방자치단체회계에, 2009년에는 국가회계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회계기준의 개발의 준거의 틀로 주로 미국의 정부회계를 사용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상장법인은 2011년부터 원칙중심회계기준인 IFRS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정부회계와 기업회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회계전문가들도 정부회계에 대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 가장 강조되는 것은 이해 가능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회계와 기업회계의 부조화는 정부회계의 발전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IPSAS에 대한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IPSAS는 대부분 기업회계기준인 IFRS의 원칙에

기준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정부회계와 기업회계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정부회계에 접근 가능성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IPSASB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개입을 하고 있으나 EPSAS의 제정 및 채택작업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 보인다. EPSAS의 제정 및 채택작업이 성공을 거두면 EU의 역내 국가는 조화로운 공공부문회계기준을 갖게 될 것이고 IPSAS도 현재보다 훨씬 높은 위상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IPSAS와의 조화에 학계 및 실무계가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06 세미나

1

## 한-스위스 발생주의 세미나 개최 「2019 발생주의 회계제도 성과공유 컨퍼런스: 한국과 스위스 모범사례」

### 가. 개요

- 일 시: 2019.10.1(화) 9:00~12:00
- 장 소: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벨뷰스위트(36층)
- 주 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ZHAW(취리히응용과학대학) 공동 주최
- 참석자: 발표자 및 토론자 포함 총 47명

#### 〈주제발표 및 토론〉

[사 회] Mr. Micheal Farley(취리히응용과학대학)

#### [주제발표]

- [발표 1] Reto Steiner 학장(취리히응용과학대학)
- [발표 2] Andreas Bergmann 교수(취리히응용과학대학)
- [발표 3] 박윤진 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발표 4] 김연중 센터장(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장)
- [발표 5] 김찬수 팀장(감사연구원 연구1팀)

#### [종합토론]

- [좌 장] 주인기 교수(연세대)
- [토 론] Reto Steiner 학장, Andreas Bergmann 교수, 박윤진 팀장, 김연중 센터장, 김찬수 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스위스 취리히응용과학대학과 공동으로 10월 1일(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9 발생주의 회계제도 성과공유 컨퍼런스: 한국과 스위스 모범사례」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취리히-서울 만나다’ 국제 행사의 일환으로 스위스 측의 제의로 추진되었으며, 양국의 발생주의 회계를 통한 공공재정관리 측면의 성과와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양국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양국의 사례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취리히응용과학대학 Reto Steiner 학장, Andreas Bergmann 교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박윤진 팀장, 지방회계통계센터의 김연중 센터장, 감사연구원의 김찬수 팀장이 양국의 모범사례와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은 국가회계사연맹(IFAC) 회장이자 연세대 명예교수인 주인기 교수의 진행으로 발표자 모두가 참여하여, 양국의 경험과 도전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2019 발생주의 회계제도 성과공유 컨퍼런스(10.1), 롯데호텔 벨뷰스위트〉

##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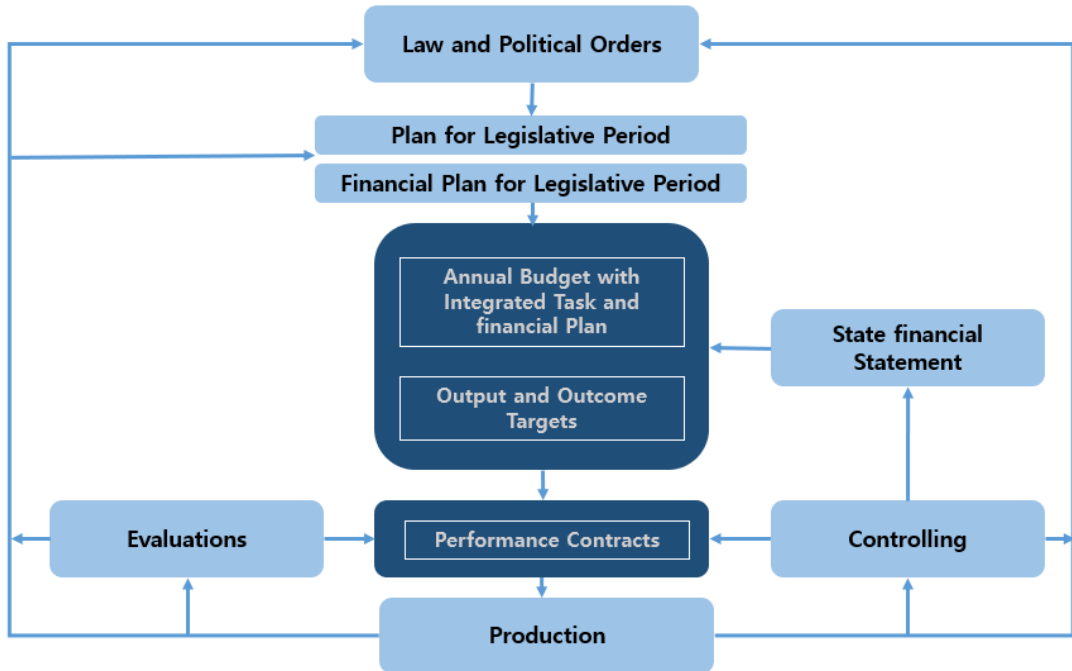
### [주제발표 1] 성과관리 중심의 재정운영: 스위스 사례

#### (Performance-Based Steering of the State: The Swiss Case)

□ ZHAW의 Reto Steiner 학장은 스위스 연방정부의 '신 성과중심 관리모델'의 개발과 그에 따른 성과 및 핵심 성공 요인에 대해 발표하였음

- 성과 중심 기반(Performance-Based Steering) 재정관리의 발전 배경
  - 공공부문에 만연한 전체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신규 지출 승인(공유재의 비극),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기대하는 하위정부(도덕적 해이),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해, 규정에 따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결정과 집행의 필요성 대두
  - (국제적 흐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공공재정관리의 개혁이 확산
- 성과 예산제도 모델 ① 성과정보를 포함한 재무보고, ② 성과에 근거한 예산편성, ③ 성과(결과) 중심 예산편성을 도입
- 다양한 관리도구의 개발: 프로그램 체계 마련, 총액예산주의, 중기계획, 성과계약
- 이러한 개혁은 투명성 및 방향제시(steering capabilities) 면에서는 가치가 있었으나, **복잡성과 재정비용 절감 실패**는 단점임
- (스위스의 현황) 재정준칙, 재정연방주의,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롤모델이나, 성과 중심의 예산제도의 선두주자는 아님
- 스위스의 새로운 관리모델의 개발 및 성공 요인
  - (신 관리모델 개발) 2017년에 개발된 스위스 연방정부의 '신 관리 모델'은 법과 규정을 기반으로 통합된 업무 및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성과 중심 관리 모델'임. 계획은 중기 계획(4년)으로 수립되며 의회와 중앙정부의 평가와 통제를 통해 매년 업데이트 됨

〈New Management Model For The Federal Administration〉



출처: Dr.Steiner, 「Performance-Based Steering of the State: The Swiss Case」 발표자료,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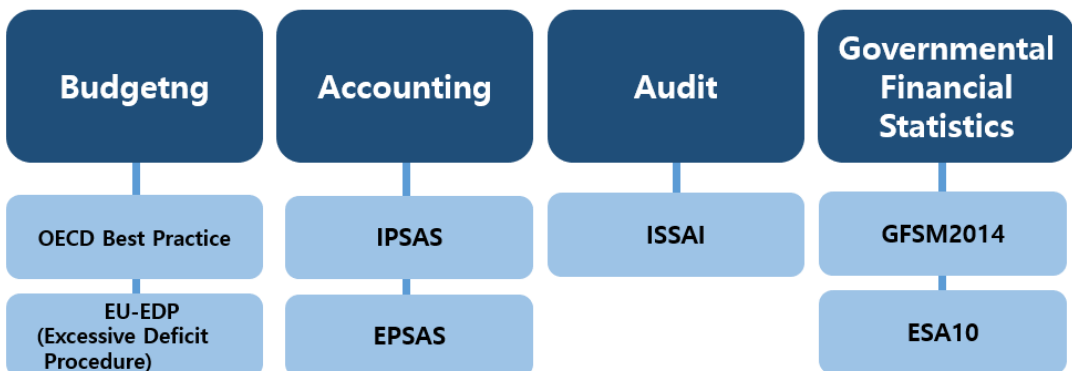
- (신 관리모델에 대한 평가) 이전 개혁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전문성이 중간 수준인 국회에 적합하며, 성과(결과와 산출물)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됨. 국회의 관여도 지속되며, 행정부는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 가능, 공공재정의 투명성이 강화됨
- (신 관리모델의 6가지 성공 요인) ① 장기, 중기, 단기의 적절한 연결 및 시스템화 ② 성과그룹 (performance groups)의 수 ③ 목표 및 측정 ④ 기관의 자율성과 인센티브 ⑤ 국회를 위한 중기계획 관리도구 ⑥ 신관리모델 운영과 구현 비용

**[주제발표 2] 스위스의 공공재정관리의 모범사례**

**(Best practices i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to achieve excellent outcomes)**

- Andreas Bergmann 교수는 스위스의 IPSAS 및 GFS2001 도입 현황을 소개하고, 기준 차이에 따른 정보의 다양성 및 복잡성을 통해 기준 정합성 제고 노력의 중요성을 제시
- (초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재정통계(GFS)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재정통계와 일관성 있는 계정과목(Unified Chart of Accounts: UCoA)을 적용하기 위한 수준임
- (2000년대 이후 통합 PFM 개혁) 국제기준의 도입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노력
  - 연방정부는 2007년에 IPSAS를 구현한 신회계모델(New Accounting Model)과 2009년에 GFSM2001을 도입하여 수년에 걸쳐 국제기준과의 격차를 좁혀 왔음
  - 예산제도 역시 현금 및 발생주의를 병행하고 있어 예산서와 재무제표의 구성이 상당히 유사함. 2017년 기준으로 IPSAS와의 ‘조세수입’ 인식 차이점만 존재
  -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5개 주(Geneva, Zurich, Basel-Stadt, Lucerne, Berne)는 2008년에서 2010년에 IPSAS를 도입 완료하고 격차를 줄여옴. 현재 1개 주(Saint gall)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주는 다양한 발생주의 형태를 가지며, 최소 요구 조건인 HAM2 및 법적 의무인 UCoA를 적용 중임

〈스위스 예산 및 회계, 감사, 재정통계 기준 현황〉



출처: Dr.Bergmann, 「Best practices i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to achieve excellent outcomes」 발표자료, 2019.

• (발생주의 정보의 활용 한계) 기준 차이로 인한 이슈

- 국회는 투명성을 강조하여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이해하지 못함. IPSAS 또는 GFSM2001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수치와 경제적 의미가 크게 달라 의사결정자인 국회에서 활용하기 어려움

〈기준에 따른 금액 차이: IPSAS vs GFS vs ESA〉

2013 (in million CHF)	Central Federal Government (IPSAS)	GFS (GFSM2001)	ESA (EDP «Maastricht»)
Surplus (+)/ Deficit (-)	+1,108	-590	n/a
Gross Debt	111,638	146,434	111,792

출처: Dr.Bergmann, 「Best practices i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to achieve excellent outcomes」 발표자료, 2019.

• (나아가야 할 방향) 신뢰성과 적시성의 적절한 조화 필요

- 스위스 정부는 재무정보의 산출기간(23개월 소요)을 단축시켜 적시성을 높이고 재무정보를 포괄적으로 활용하고, 발생주의 회계기준과 GFS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제 기준과의 차이점을 줄여 우수한 결과를 달성할 것임



〈2019 발생주의 회계제도 성과공유 컨퍼런스(10.1), 롯데호텔 벨뷰스위트〉

### [주제발표 3] 발생주의 회계정보 활용을 위한 노력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박윤진 팀장은 한국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통한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성과평가, 원가세분화, 재정지표 관점에서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함

#### •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통한 4가지 성과제시

- ① 국가재무제표 통해 재무 현황을 한눈에 파악, 의사결정에 효율적 활용
- ② 국가의 숨은 자산을 파악하여 국가자원관리의 체계를 강화
- ③ 충당부채를 인식하여 연금개혁을 촉발
- ④ GFSM2001을 적용하여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해외 신인도 향상에 기여

#### •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활용을 위한 추진과제

- (성과평가지표의 개발 및 활용) 성과평가가 유용한 용자사업, 박물관 등 시설운영사업 등에 용자보조 비율, 단위원가와 같은 발생주의 성과지표를 개발 및 활용
- (재정지표의 개선) GDP 대비 순부채, 발생주의 재정수지 등과 같은 발생주의 재정지표의 개발 및 공시 확대
- (원가 세분화) 원가집계 단위를 예산편성 단위와 일치하도록 원가정보 세분화 추진 필요. 국가회계예규 마련, 차세대 dBrain 시스템 개발 등 추진

### [주제발표 4] 한국 지방정부의 재정통계 현황과 과제

□ 지방회계통계센터의 김연중 센터장은 지방정부 측면에서 재정통계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재정통계를 비롯한 재무정보의 활용과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함

#### • 지방정부 발생주의 재정통계 현황

- 국가가 PSDS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를 작성하여 OECD에 제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5년부터 각 지방정부 수준의 공공부문 통계 작성

#### • 지방재정통계의 활용 및 향후 과제

- (활용을 위한 노력) 지방회계통계센터는 2018년부터 발생주의 재정정보의 활용 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수행, 행정서비스의 발생원가와 서비스 대가에 대한 분석연구용역 진행

- (지방재정통계의 활용) 행정안전부는 14개 지표에 대해 전국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컨설팅을 실시함. 특히 법에 정해진 6개 재정지표 중 하나 이상이 심각한 수준일 때 재정위기 지방정부로 지정하고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토록 함
- (향후 과제) 발생주의 정보 활용 사례 개발, 재정 컨설팅 방법론 고도화, 법령에 따른 재정상황 분석 등 발생주의 정보 활용 노력, **통계 작성 ERP시스템(e호조)**의 영역을 확대, 실무자 교육 및 주민의 관심 제고를 통한 재정정보 활용 기반 확충

**[주제발표 5] 회계책임성 확보를 위한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한계**

□ 감사연구원의 김찬수 팀장은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생주의 회계정보 활용 실태 및 국회 등 의사결정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 **감사원의 결산검사**

- (업무 목적) 감사원은 회계연도의 재정활동에 대한 결산서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확인하고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수행함
- (활용실태) 재무제표의 감사 결과 분석, **검사 지적 사항을 7가지 항목으로 유형화**하고 자산 부채별로 검사 지적 금액의 추이를 분석하여 향후 결산검사 시 참조

• **발생주의 정보 활용의 한계와 시사점**

- (감사원) 발생주의 정보는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 사업 관련 단위사업 수준의 원가정보 및 주석과 같은 설명 정보가 추가 필요
- (국회) 설문조사 결과 발생주의 정보는 이해 가능성과 유용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음. 연금, 용자, 세입·세출외거래, BTL·BTO 정보 등과 같이 국회가 선호하는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할 필요 있음



〈2019 발생주의 회계제도 성과공유 컨퍼런스(10.1), 롯데호텔 벨뷰스위트〉

### [종합토론 및 Q&A]

□ 양국의 사례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주요 논의<sup>1)</sup>

- 논의 1: 뉴질랜드 등 다수 국가들은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되었다. 양국에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무엇인가?
  - (스위스) 1970~1980년대에는 GFS, IPSAS 등 국제기준이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었음(Andreas Bergmann). 스위스는 민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부업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의 효율적인 제도 도입에 거부반응이 없었음.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이 다른 나라보다 용이했을 수 있음(Reto Steiner)
  - (한국) 한국 역시 IMF 등의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Top-down 방식의 예산편성, 성과평가 등과 함께 재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음. 또한 재정정보 시스템의 개발 역시 제도도입에 기여하였음(박윤진 팀장).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 먼저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였고, 재정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대한 기대로 도입됨(김연중 센터장).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4대 재정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였고, 선진국의 재정제도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 도입하였음(김찬수 팀장)

1) 이해를 돕기 위해 논의 순서 등은 일부 조정되었음(편집자 주)

• 논의 2: 발생주의 재정정보의 공개 현황 및 수준 (객석질의 포함)

- (스위스) 주요 의사결정자의 경우 전체 재무제표를 볼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요약재무정보 “한눈에 보는 연방재정(Federal finances at a glance)<sup>2)</sup>”(10페이지 내외)을 공시함. 자료의 다운로드 횟수를 통해 재무정보가 공공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정보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요약된 재무정보 제공은 매우 필요함(Andreas Bergmann)
- (한국) 한국 정부는 되도록 많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현재 정보공개 현황은 중앙정부의 경우 열린 재정, 지방재정의 경우 지방재정 365, 공공기관은 알리오, 지방공사는 클린아이에서 재무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하지만 각각의 정보가 다른 사이트에서 공개되어 정보 이용자가 한번에 정보를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따라서 차세대 dBrain 시스템 개발을 통해 이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박윤진 팀장)

• (논의 2 관련 객석 질의) 한국 발표 중 국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조사한 것과 같이, 스위스도 정책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가? (전중열 교수)

- (스위스) 실제 설문조사 결과는 없으나 국회 등 재무위원들의 피드백을 보면 종합적으로 재무정보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Andreas Bergmann). IT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결정자들은 ‘요약 정보’를 주로 확인하고, 전체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재무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임. 방대한 정보의 양 때문에 본인이 잘 아는 분야의 몇 가지 정보만 살펴보는 경향이 있음(Reto Steiner)

• 논의 3: 정책의사결정자를 위한 발생주의 회계제도 관련 교육

- (스위스) 스위스는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을 위한 정기적 교육프로그램이 존재함. 정치인에 대해서는 많은 대학에서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취리히응용과학대학 경영대학원에도 발생주의 회계 관련 프로그램이 있음. 고위공무원을 위한 교육은 ‘장관용’으로 개발되기도 함(Reto Steiner). 추가적으로 고위공무원의 교육프로그램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교육을 진행되며, 특히 재무정보를 어떻게 읽고, 사용하는지를 주로 교육함. 가장 큰 강점은 장관 등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1:1로 교육이 진행된다는 것임(Andreas Bergmann)

2) [https://www.efv.admin.ch/efv/en/home/finanzberichterstattung/bundeshaushalt\\_ueb.html](https://www.efv.admin.ch/efv/en/home/finanzberichterstattung/bundeshaushalt_ueb.html)

- (한국)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실무자 교육은 잘 갖춰져 있으나 정책의사결정자를 위한 교육은 올해 처음으로 ‘국가회계 정책적 활용과정’이 시범 운영되었음.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고위직 공무원 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며, 교육 내용 및 대상에 대해 스위스의 모범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박윤진 팀장). 지방 역시 예산결산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많으나, 발생주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실무자 관련 교육과 지방의회 결산검사위원을 위한 교육만 제공함. 고위 공직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됨(김연중 센터장)
- 논의 4: 공공부문 재무감사와 민간회계법인의 기여 정도
  - (스위스) 26개의 주 중에 독립된 감사 기능을 수행할 기관이 내부적으로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주의 규모가 작거나 비용 측면에서 내부에 감사기관을 두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등은 민간에 위탁하여 감사를 수행함. 매년 감사기관은 공개입찰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예상되는 곳을 선정함(Andreas Bergmann)
  - (한국) 정부부문 결산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직접 수행하나, 민간회계법인 등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감사의견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민간부문의 회계감사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부문 결산감사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고 있지 아니함.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우리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 아니하고, 의견 표명 여부에 대해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주제임(김찬수 팀장)
- 논의 5: 향후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전과제
  - (스위스) 발생주의 정보 간의 차이 해소 및 정합성 제고가 필요함. 예를 들어, 재무정보와 재정통계(GFS) 등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부채정보는 설명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소요되며, 이용자에게 어렵게 다가옴. 이를 통일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나, 스위스 정부는 이를 가장 큰 도전과제로 보고 있음(Andreas Bergmann, Reto Steiner)
  - (한국)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발생주의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지표 및 재정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재정정책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과제라 생각함(박윤진 팀장).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재무정보 산출에 그치지 않고 이를 예산편성으로 환류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며, 또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임(김연중 센터장)

- (종합) 요즘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투명성과 이해 가능성 있는 재무정보임. 포퓰리즘에 편승한 무책임한 재원낭비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런 의미에서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한 이번 컨퍼런스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됨(주인기 교수)



〈2019 발생주의 회계제도 성과공유 컨퍼런스(10.1), 롯데호텔 벨뷰스위트〉

# 07

## 공지사항

### 1 2019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우리 센터에서는 2019년도 수행할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과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받은 주제는 자체 심의를 통해 기획과제, 수탁과제, 위탁과제 등으로 선정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과제 제안과 관련한 센터의 팀별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 의견제안 코너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뉴스레터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에서는 뉴스레터를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통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에서 가입신청 또는 ② Tel. 044-414-2265(연구행정총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3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의 기준과 관련법령 및 센터에서 진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 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스레터를 비롯하여 각종 발행물과 세미나자료, 연구보고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편 집**

한소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현지용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 **발행인**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265(센터), <http://gafsc.kipf.re.kr>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선도합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265 Fax 044.414.2570 Homepage <http://gafsc.kipf.re.kr>

2019년 10월 30일 발행

